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포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토론회

주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여영국
국회의원 진선미

주관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포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토론회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포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 04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축사 06
김세연 국회의원 · 남인순 국회의원 · 여영국 국회의원 · 진선미 국회의원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참여의 의미 10
김도현 · 이수종 · 천성은(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차기 심의를 위한 과제 18
김영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Session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발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28
이영희 교수(단국대학교)

토의

학교와 학생인권 50
공현 활동가(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57
구본창 정책국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교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63
송지은 변호사(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교육부 · 여성가족부

Session 2
모든 아동을 위한 포용국가

발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 74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아동인권포럼)

토의

양육자지원 및 아동돌봄서비스 88
김정덕 공동대표(정치하는 엄마들)

장애아동지원체계 102
이용석 부위원장(CRPD NGO연대 보고서총괄위원회)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 114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소년사법과 아동권리 122
김희진 변호사(국제아동인권센터)

이주아동의 권리 130
이탁건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교육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정부도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양성일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가 더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최를 허락해 주신 김세연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모색을 위해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동권리협약의 새로운 도약점이 되는 올해, 정부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아동권리 상황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가 끝난 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그 최종견해를 통해 그간 우리나라가 달성한 성과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양허가제 도입에 따른 유보조항 철회,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는 등 우리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 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완화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91년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수차례 심의를 거치면서 많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받은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풀지 못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의 경쟁 완화, 이주아동 지원 등 사회 전체적인 합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과제들이 그렇습니다.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의지만으로 간단히 풀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포럼이 그러한 고민과 협력을 더욱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아동권리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 **이양희**

안녕하십니까?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입니다.
2019 아동권리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난 9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의 현장에서 만나 뵈었던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런 반가움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함께 해주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의정활동 중에서도 늘 아동을 생각하시는 김세연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또한 준비하실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였음에도 의미있는 원고를 준비해주시고, 발제자로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동 당사자로 협약 심의 전 과정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신 김도현, 이수종, 천성은 세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11월 20일은 세계 아동의 날(Universal Children's Day)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11월 20일이 있는 주간을 아동권리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아동권리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국 곳곳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의 포럼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심의 이후 받은 최종견해 이행방향을 논하기 위한 장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경쟁적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생각은 없는지, 아동에게 좀 더 포용적인 사회일수는 없는지 등 우리에게 뼈아픈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리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아동인권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무이행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가장 중요한 책무성을 지닌 의무이행자입니다. 오늘 행정부, 입법부, 학계, 시민사회와 아동이 함께 모여 나누는 이야기가 허공에 맴도는 소리로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인사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아동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어른들의 약속이 오늘 논의되는 고견을 통해 보장되고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김세연 국회의원
부산 금정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2019 아동권리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과 진선미 의원님, 정의당 여영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리고 교육훈련하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7일, 2017년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회, 아동인권단체는 우리 사회 아동의 권리를 제약하던 관행, 제도, 그리고 문화를 찾아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 주기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법제도 개선과 교육환경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에서부터 수감자 자녀, 성소수자 아동 등과 같이 우리 사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망라하여 권고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권고받은 최종견해를 바탕으로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전체의 노력을 기울여 2024년 12월 예정된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아동인권이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포럼을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견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아동인권 현주소를 직시하고, 향후 완전한 협약 이행이 있기까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짚으며 체계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아동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어른들의 약속이 오늘 논의되는 고견을 통해 보장되고 지켜지리라 믿으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의미있는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도 정부와 함께 UN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 국회의원
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小雪)'을 앞둔 겨울의 입구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에 따른 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는 〈2019 아동권리포럼〉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을 함께 주최해주신 김세연 · 여영국 · 진선미 국회의원님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 주관해주신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양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발표자, 진행자,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9월 27일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공표했습니다.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GDP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저소득 · 장애 · 이주아동 등의 차별 경험,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률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체벌금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배상,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대안 검토 등을 권고했습니다. 저도 201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적으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 아동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울주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부모교육을 명시하였으며, 입양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대표발의한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성매매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의 핵심적인 개정안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이 개정안은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라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반복적 · 직업적 성매매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전문 · 특화된 보호 ·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아청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정부가 개선해야 할 아동권리 정책과제가 많습니다. 국회도 정부와 함께 UN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아동권리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국회도 책임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영국 국회의원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반갑습니다, 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여영국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된지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2019 아동인권포럼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포럼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크셨을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그리고 참여 등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을 비롯한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다양한 아동의 'rights'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익증진을 위해 협약과 목표를 세우고 대한민국 또한 그 속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17대 목표 중 하나도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아동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
지난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상황에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권고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말하지만 아동에 대한 권리도 선진국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현실은 그 이상과 다소 다른 것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2007년과 2011년 대한민국의 아동복지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고,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인 '학생인권조례' 조차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의 지역에만 공포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권익이 많이 부족한 우리 사회 현실에서 2019 아동권리포럼이 대한민국의 지난 30년 아동역사를 포괄하여 아동의 권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성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역할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협약이행에 대한 책무의 범위를 확장하여 행정부뿐만이 아닌 입법부와 사법부도 그 책임을 인지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발판을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아동의 인권이 어디에서나 보장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포럼을 준비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포럼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산된 문제의식들이 사회 현실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
서울 강동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에 따른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써주신 국제아동인권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발제자 및 토의 참가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아동권리 보장의 주요 영역에서 여전히 미흡하거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이 담겨있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비차별,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교육, 그리고 소년사법 등의 분야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권리포럼은 보건복지 전문가와 아동권리 관련 실무자, 관계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적 책무를 중심으로 풍성한 토의가 이뤄져 구체적 대응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생산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가 보다 활발히 오가길 바랍니다. 또한 2024년에 제출하게 될 제7차 국가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아동권리실현에 대해 자랑스러운 내용들이 더욱 풍성하게 담기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2019 아동권리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포럼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산된 문제의식들이 사회 현실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아동참여의 의미

김도현, 이수종, 천성은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아동의 참여권이 존중받는 세상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 5-6차 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아동 당사자로서 제 경험을 중심으로, 최종 견해 중 참여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나라엔 만연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본인의 의견을 표명할 창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요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공감한 청소년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고, 지금까지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체험학습을 내고 시위에 참여하려고 한 아동들 중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힌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와 함께 시위를 준비한 한 친구는 '그런 시위에 참가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넘기겠다'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시위 참가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을 둔 학교는 83.1%나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교육기본법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사항입니다.

참여권에 대해 얘기할 때 학교 내에서의 아동 의견 반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생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 참여가 보장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저를 포함한 아동들이 직접 집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자격이 성적에 따라 다르게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적을 이유로 임원 출마 자체를 막거나 상위 몇 퍼센트의 학생에 한해 학생회 활동을 허용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참여권조차 성적을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회가 학교로부터 지나친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영향을 받고, 교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칙 제·개정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토요일까지 기숙사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공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학부모의 투표와 교사들의 협의로만 결정되었습니다. 한 선생님께 문제제기를 했지만, "학교 정책에 학생 의견 수렴이 왜 필요하냐"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청소년의 입을 틀어막고, 목소리를 지우려는 우리나라 사회를 향해, 유엔은 이런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최종 견해가 힘 없는 권고사항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아동에게도 집회 참여 등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교육기본법에 반해 자유권을 제한하는 교칙을 바꾸어야 하며, 학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사유에 '가족 여행' '견학' 말고도 '사회 참여' 항목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학교 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참여기구로서 학생회가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의견 청취의 장을 만들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도 정식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교장 개개인의 재량으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은 성인과 다르지 않은 존엄한 시민입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 성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참여 기회를 부여 받는 소극적인 권리 행사를 넘어, 본인 스스로 선택한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약이나 부당한 대우 없이 모든 아동이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목표와 아동의 삶

한국의 입시제도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의 많은 이해관계와 함께 고착해왔고 정착했습니다. 잘못된 점이 보여도 아무도 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과도한 입시제도 속에서 상향된 교육 수준으로 인한 이익에만 집중했습니다.

나무가 숲을 볼 수 없듯,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의 교육을 받고 한국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 자란 학생이자 개인인 저 또한 진정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 경험해본 적 없기에,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무엇 하나 당연하게 말을 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입시제도와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신분으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본 우리나라의 교육, 나의 친구들이 알려준 것들, 그리고 아동보고서를 쓰고 아동회의에 참여하며 직접 느낀 한국의 입시제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뒤, 저와 저의 학교 친구들은 모두 일주일 간 꼬박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매일 6시 반에 일어나 10시에 집에 가는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교에는 야자가 자율이지만 저희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야자를 빠지면 선생님이 생기부를 안 적어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기부에 대한 협박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해 뜨는 것을 보며 등교했고 밤이 되어서야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주로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내거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수업할 때 대부분은 선생님이 말을 하시고 학생들은 받아 적는 수업을 했고 학교 내신 영어는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외워야 빈칸을 서술형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70%로 늘어버렸기 때문에 학교는 시험을 더욱 어렵게 냈고 그 30%로 학생들의 내신을 냈기에, 외우는 공부가 나의 사고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열심히 시험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몇 선생님이 전교생의 생기부를 적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몇 학교의 교과 생기부는 일부 상위권 학생들만 적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적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학원에서 적어주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면접에서 만점을 받은 선배에게 비결을 물어보니 서울 강남의 유명 학원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반에서 2~3명은 지방을 떠나 서울의 학원에 다녔고 실기 또는 학종은 실제로 그 친구들이 더 좋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방학 때 서울에서 유명 과탐 모의고사 과외를 들었던 친구들도 성적이 20~30점 올랐습니다. 그러나 몇 백만 원을 입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학생들은 한정적입니다.

매일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모두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압박감을 견디며 사는 친구들, 그들에게 인생이란 항상 걱정되고 우울하며 회피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완벽한 교육제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입시제도가 그렇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정시와 수시를 떠나서 이렇게 경쟁적인 분위기 속, 공부가 인생의 다라고 이야기하며 학창시절의 공부가 인생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고가 아닌 암기를 시키는 교육, 양극화 되고 똑같이 강압적이며 암기식이고 서열화된 입시제도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0.98%로 떨어졌다는 기사에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문구가 인간을 인간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본 대가라는 말이었

습니다. 저는 26명의 반에서 2명 만 외동을 낳고 싶다는 교실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자식을 낳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아이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싶지만 평균 4.6살부터 사교육을 시작하는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 제도의 근간을 바꿔 아동들이 사고하며 배우고, 아동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배우게 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빨리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빨리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이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스스로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 그들이 주류가 되어 보편적인 모든 인간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사회와 인간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사고하는 교육,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통합교육이란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장애아동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기회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과 또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현주소를 알리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분들께 가장 강조하여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이 분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 실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을 특수학교에 격리 수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아동과 통합시키는 교육입니다. 단순히 장애아동들과 비장애아동들이 같은 교실에 지낸다고 해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들이 본인들의 학급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아존중감을 느낄 때,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통합교육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장애아동들이 교육에 있어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조별과제에 있어서 장애아동들을 평가할 기준이나 같이 참여하게 도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미비하여 장애아동들이 조별과제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교사들조차 같이 참여하게 독려하지 않으며, 배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장애아동들과 비장애아동들이 서로 협력해 나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특수학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나,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장애아동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비장애아동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길거리 캠페인이나, 인식개선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장애아동들은 심리적으로 비장애아동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비장애아동들과 다툼도 발생할 수 있고 갈등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장애아동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합학교에 배치하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한 장애아동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장애아동들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체장애아동들은 사회복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생활을 합니다.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아니다 보니, 장애아동들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며, 사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치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기초적인 교육이라도 받은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배치하면 장애아동들이 활동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입니다. 장애아동들이 갈 수 있는 학교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며, 학교측에서도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특수학급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의 여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개인에 맞춘 개별화 교육의 실현, 장애아동들과 비장애아동들의 협력적 관계를 통한 교육 등이 실현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EMO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차기 심의를 위한 과제



김 영 지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아동권리포럼(2019. 11. 18)

TABLE OF CONTENTS

01.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02. 유엔의 협약 모니터링 관련 주요 지침
03.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차기 심의를 위한 준비
04. 기타 제언

Ⅰ.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 4년간의 대장정

2016. 7. 8.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부처 협약이행 실적 취합 공문 발송
→ 2019. 10. 2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공표까지

1. 광범위한 참여와 적극적 모니터링 : 민간,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 민간보고서 16건, 아동보고서 4건 유엔 제출, 12개 단체 본심의 참석 및 로비활동
- 국가보고서, 추가보고서(쟁점목록 답변서) 단계별 의견 제출로 쟁점 주도

2. 유엔 최종견해(권고문) 반영

- 쟁점목록 선정, 최종견해에 민간. 아동. 인권위 의견 적극 반영
-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와 석면, 경쟁적 교육환경과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베이비박스, 스쿨미투, 형법상 13세 미만 의제강간죄 연령(성행위 동의 최소연령) 상향,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형사 책임 최저연령 만 14세 유지, 우범소년 규정 삭제 등

Ⅰ.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3.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 심화, 이슈의 확장

- 관련 정책부처의 확대 : 2016년 실적취합 시 21개 부처 113개 부서, 보고서 구성 14개 부처 82개 부서
- 민간과 인권위 보고서를 통한 이슈 형성과 의제화

4. 정부의 관심 확대

- 정부대표단 : 수석대표 보건복지부 차관. 부처별 과장급, 참여기관 확장(국방부, 환경부, 헌법재판소 등)
- 당사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성과(para. 3)

□ 의의

1. 국제사회의 협약이행 모니터링시스템 → 국내 아동. 청소년 인권증진 활동을 촉진시키는 추동력
2. 민간단체의 인권역량 : 보편적 인권으로서 아동인권 이슈 발굴, 선도

Ⅱ. 유엔의 협약이행 모니터링 관련 주요 지침

1. 국가보고서의 구성

-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이행 시 부딪힌 주요 장애요인과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제공(para. 11)

- 법, 법률체계, 제도, 정책,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아동 연령그룹과 연령별 고유한 필요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적 성격의 정보 제공(para. 12)
  * CRC/C/58/Rev.3.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 협약의 이행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인 상황과 사실적 상황 모두 세부적 서술
  : 채택한 법적 도구의 목록이나 설명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법적 도구가 실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명시(para. 25)
  * HRI/GEN/2/Rev.6.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가이드라인

Ⅱ. 유엔의 협약이행 모니터링 관련 주요 지침

2. 보고 과정

- 당사국은 보고서 준비 절차를 당사국의 국제적인 의무 준수 차원뿐 아니라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정책기획 및 시행을 위한 인권 보호 현황 점검 차원으로 인식할 것(para.9)

  → 국내 법과 정책을 협약 조항들과 일치하도록 취한 조치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 실시
  → 보편적 인권 강화라는 틀 안에서 협약에 명시된 인권의 향유 촉진을 위해 달성한 성과 모니터링
  → 협약 이행에서 문제점과 부족한 점 파악
  →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개발

-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조 및 상호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관련 당사자들이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para. 10)

Ⅱ. 유엔의 협약이행 모니터링 관련 주요 지침

- 당사국은 보고서 준비를 위한 제도적인 틀 마련. 부처간 초안 작성 위원회 및 각 정부 부처마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 지정 등의 방식 고려.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최종견해의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데 효율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 내 하위 수준의 거버넌스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해당 구조의 유지 및 영구적인 체계 구축 가능(para. 13)

- 이와 같은 제도적인 체계 하에서 (해당 정부 부처 및 통계 당국으로부터) 모든 통계 및 기타 인권보호 시행과 관련한 데이터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para. 15).
  * HRI/GEN/2/Rev.6.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가이드라인

Ⅲ.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차기 심의를 위한 준비

1. 협약이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권고사항 분석 및 부처별 5개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매년 추진경과 모니터링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모니터링과 피드백

- 이행 과제별 구체적인 목표치와 '기한' 설정, 소관부처와 부서 지정

- 민간과 아동이 참여하는 범부처적 작업
  → 5년간의 모니터링 결과가 누적되어 제7차 국가보고서로 구성(2024.12.19. 제출)

※ 국가보고서 작업 : 5년간의 이행성과 분석과 미진한 과제 이행을 추동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그 자체가 협약의 이행과정이어야

Ⅲ.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차기 심의를 위한 준비

2. 협약 담당조직 설정 및 자원(인력, 예산) 배정

- 아동권리 전담기구인 '아동권리보장원(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내 권리업무조직 기반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 법적 기능(2019. 7. 16. 설립)
- 아동복지법 법4조제6항의 업무 위임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제7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3호)

- 현재 직제상 아동권리보장원의 통합돌봄국 돌봄기획. 홍보팀에서 '아동권리증진 사업 및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서 명칭에 '권리'가 포함된 전담부서 필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상설 사무국 기능

Ⅲ.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차기 심의를 위한 준비

- 5. 6차 심의 관련 업무 예시 : 5. 6차 권고사항 분석 및 소관부처 설정작업, 협약이행계획 수립 준비,권고사항중 공통사항 등 직접 관리사업 진행(예 :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필요성과 현실적 상황 장애요인 분석. 자료수집과 전문가 회의 등))

- 전담부서 업무 개발 : 협약이행계획 수립 및 매년 추진 성과 분석, 협약 관련 DB 구축(1차~5. 6차 협약관련 자료 등), 정기적 협약 국제적 동향 분석(일반논평, 일반토론의 날 문서, 선택의정서 가이드라인 등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근 자료 수집 및 협약이행 고려사항 분석), 아동분야 인권교육 현황과 수요 파악을 통한 인권교육 기본계획수립, 인권교육 및 홍보 실시, 협약 관련 통계수집. 관리체계 마련, 아동예산 기준 설정을 통한 재정 데이터 관리(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작업 연계로 지자체별 아동예산 파악 작업) 협약 관련부처 담당자 정기 워크숍과 인권역량 교육, 주요 인권이슈별 대응,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조직과 협력사업, 민간단체와 아동자치기구들과의 정기적 미팅 등

- 각종 자료 수집. 발간, 번역, 회의, 외부자원 활용에 필요한 예산 편성

Ⅲ. 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차기 심의를 위한 준비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 수년간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 논의 필요
-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있는가
- 아동정책의 주류화. 국정운영에서 주요 의제화 노력

※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Ⅳ. 기타 제언

1. 협약 관련 논의 시 용어 : 아동. 청소년

- 우리 문화와 사회통념상 '13~18(중. 고등학생 연령대)'에 협약 대상이자 주체임을 인지시키는 작업. 청소년분야의 인식 확대 필요
  ※ 협약의 아동 : 만 18세 미만

2. 사법부, 입법부 참여 : 협약 이행 의무자

ㅇ 사법부
- 사법관계자 아동권리협약 역량 강화 (권고문 para. 7)

※유엔 2012년 유엔인권최고대표 제안 개혁안 : 행정부 외 입법부와 사법부 관심과 참여 확대
- 국가보고서 심의 시 대표단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하는 것에서부터 최종견해의 이행, 감시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와 함께 국회의원과 판사들의 참여 필요
  * 신혜수(2019). 약식보고절차와 보고 전 질의목록작성의 의미와 참여방안

ㅇ 입법부
- 국가보고서의 많은 내용 중 : "국회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 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 입법부의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 증진을 위한 법 제정
  →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2015년 보건복지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Ⅳ. 기타 제언

※ 아동권리협약 비준 시 특이사항

- 비준 당시 국회동의 절차 누락(타 조약들은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시행 : 여성, 인종, 장애, 고문, 사회적, 자유권 등). 국회동의 불필요한 사항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회적 확산 미흡

- 헌법 제60조제1항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 비정부기구(NGOs)와의 협력

- 민간단체의 협약 역량 공유
- 약식보고절차 확대 시 민간의 역할 더 중요해짐
- 민간단체와도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8년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SRP) 도입
- 보고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쟁점목록 질의(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
- 보고 전 쟁점목록 채택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 NGO 역할 증대

Ⅳ. 기타 제언

4. 협약 이해 증진을 위한 자료 개발

- 권고사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각종 유엔 문서들(일반논평, 관련 국제협약과 지침, SDGs, 선택의정서 가이드라인 등) 번역, 협약이행에의 고려사항 분석작업 등

※ 일반논평(현재 24호까지 발표. 번역은 인권위에서 19호까지 진행)

5.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안착과 확대 → 아동정책 주류화 기여

6. 협약 및 선택의정서 번역 용어 검토

- 아동권리협약 정부 공식번역본 오역 수정 후 탑재(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 ~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 → (정정) **장애(disability)**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AC)
-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MEMO

Session 1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발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이영희 교수(단국대학교)

『아동 ·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패러다임 전환』
- 모두의 존엄과 다채로운 성장을 위한 교육 -



단국대학교 이 영 희
2019. 11. 18

『본 발표 일부 내용은 2018년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 유·초·중등 교육분야 미래 교육 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에서 발췌 정리함』

단국대학교

목차

I.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개요
II.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
III.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견해
IV. 아동 ·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V.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향 제안

단국대학교

I.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 개요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권리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3.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관점과 우리의 경향

단국대학교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
-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6개국(2019년 현재) 비준

UN 아동권리협약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업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어린이 인권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이 협약을 받아들였음.



1.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

1)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4)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1) 비차별(NON-DISCRIMINATION)

-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리야 하는 원칙

2)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

3) 생존과 발달의 권리(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원칙

4) 아동의 의견 존중(RESPECT FOT THE VIEWS OF THE CHILD)

-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

3.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관점 및 우리의 경향

1) 보호 대상으로서의 아동: 생존권, 발달권 및 보호권 보장

2) 인권의 향유자(human rights holders)로서의 아동: 참여권 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을 단순한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서 만이 아니라,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 ' 에 따라 정책 등에 우선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고려하기를 요청함

[우리나라에서의 아동에 대한 관점]

- 아동을 보고 객체로서 만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 인권의 향유자로서의 아동의 전환이 필요함(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관점 전환 필요)
- 학교 교육 영역은 아동 인권의 실습장이며, 아동의 생활과 습관, 그리고 미래의 성인으로서 성장을 지원하는 삶의 터전인 만큼 교육과 학습에 대한 아동 인권의 중요한 관점(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함

II.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

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
2. 한국 아동 · 청소년 교육 관련 인권 실태

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1)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김영지 외, 2016)

- 2011년 유엔 권고사항 이행 성과 국가보고서를 위한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개선 정도 및 정책 검토 연구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체계'와 설문조사 도구 개발하여 초등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 여명 대상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 의 인권 영역 구분에 기반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6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 및 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의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

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 체계'와 설문조사 도구 개발하여 초등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만 여명 대상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 ' 의 인권 영역 구분에 기반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6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 및 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의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
- 148개 지표항목 중 60개는 아동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88개는 행정문서와 기타 통계자료 기반 조사

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4) 연구 결과: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21개 세부 지표)

- 긍정적 결과: 학생 취학률, 학생진학률은 OECD 대비 높은 수준,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지속적 감소 추이 등 교육여건은 좋아지고 있음
- 부정적 결과
- 학생 1인당 GDP 세계 30위권(PPP 기반), 학업중단률 2015년 전체 0.8%이며, 고등학교 13% 가장 높음(2015년 학업중단자는 47,070명으로 누계가 30만명이 넘어 학업중단 현상은 교육문제 뿐 아니라 국가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상황)
- 학업포기 충동비율은 25.1%로 전체 4명중 1명 해당하고, 학업포기 첫째 이유로는 학업부담이 41%로 나타남. 무기력 상태가 학업포기 이유로 16.9%, 학교생활 만족도에서 친구로부터 존중은 91.4%이나, 교사로부터 공정 대우는 20.0%로 부정적 응답임

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4) 연구 결과: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21개 세부 지표)

- 부정적 결과
- 학생들의 평일 여가 시간이 2시간도 안되는 비율이 54.3%로 나타났고,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이 3시간이 넘는 학생 비율이 49.4%로 학습시간 과다한 것으로 조사됨
- 여가시간의 부족과 학습시간의 과다 현상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며, 대학입학의 학업부담이 문제임.
- 보고서 전반적 결과
-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도는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학업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문제, 여가시간 부족, 체벌 경험, 시민으로서의 인정 미흡, 저소득층 자녀의 낮은 인권 수준 등의 지표 여전함

2.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 교육 관련 인권 실태

- 학업 성취는 최상위 그룹에
- 정의적 영역은 최하위 그룹에 속함

한국 학업 성취·흥미도 불균형

	성취도	흥미도
수학	1위	28위
과학	5위	26위

OECD 35개국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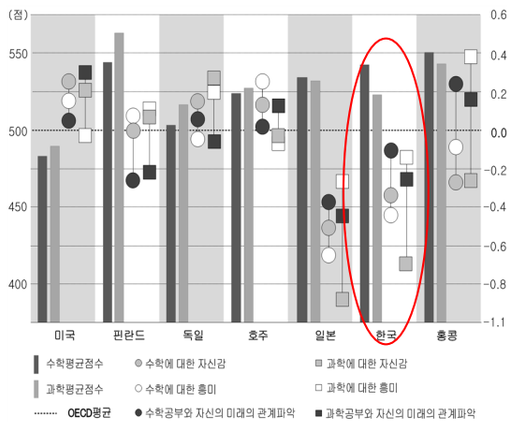


그림 2. PISA결과 7개국 비교

2.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 교육 관련 인권 실태

한겨레

"몸이 그냥 거부해요"…학생 47.3% '학교 관두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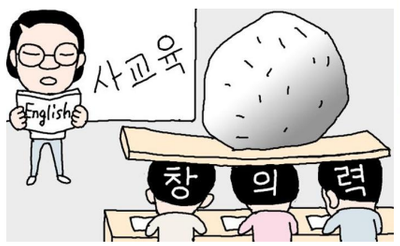
조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전국 중·고생 2871명 설문조사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 16.5%가 경험
"벌점 받고 선도위 가느니 맞고 끝내는 게 낫다"
시대착오적 두발 규제도 여전
실질적 권리 증진만이 학생 불참을 방법



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빌딩 레이첼카슨홀에서 조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국교직원노조 등 관계자들이 2019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8&aid=0002473350

2.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 교육 관련 인권 실태





III.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인권위원회 견해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3.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관점과 우리의 경향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A. 일반이행조치)

- 비차별,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교육, 그리고 소년사법 등의 분야에 대한 시급한 조치 필요

1) 법 제정
2)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3) 조정
4) 자원의 할당
5) 자료 수집
6) 독립 모니터링
7) 보급, 인식제고 및 훈련
8) 국제협력
9) 아동권리와 기업부문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B. 일반원칙)

비차별

1)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접근 차별
- 농어촌, 경제적 취약 계층, 장애, 이주, 다문화가정, 탈북 아동의 출생, 보육, 교육, 보건의료, 복지, 여가에 대한 차별
- 성적에 근거한 차별이 학교에 만연
- 한부모 가정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
-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지속과 성소수자 관련 정책 불충분

2)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법, 정책 증진 및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전략 시행과 차별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중 캠페인 시행
- 당사국 영토의 모든 아동 대상 출생, 보육, 교육, 보건, 복지, 여가 등에 동등한 국가 지원 보장
- 학교에서 성적 근거 차별 방지 및 근절
- 양육비 접근에 있어서 모든 가정에 동등한 대우 보장 및 관련 법과 관행 점검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B. 일반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관련된 재판 절차, 의사결정,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반영 적용
- 폭넓은 아동 참여와 함께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적용 확장
- 모든 분야에 아동 최상 이익을 결정하고,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비중 부여하는 절차 및 기준 개발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 자살률, 특히 가정문제, 우울증, 학업 부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포괄적 정책,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일반 대중 대상 아동 자살 예방과 근본 대책 마련 촉구
- 가습기 살균제 초래 건강 피해 불충분한 지식과 불충분한 구제 및 배상 노력 지속
- 화학물질 관리 및 유해물질 관련 사건 예방 노력 강화
- 미세 먼지 및 석면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B. 일반원칙)

아동의 견해 존중

1) 현재 발의된 가사소송법안(2017)이 13세 미만 아동의 '의견청취권보장 주목하지만 현재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하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 거의 없음
2)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가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에 정당하게 고려될 것을 보장 촉구
- 성적에 관계없이 학교 내 모든 아동의 견해 표현 기회 보장 촉구
- 아동복지법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규정 보장
- 가사소송법안 신속한 제정 포함하여, 아동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그들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C. 시민권과 자유

- 출생신고/정체성에 대한 권리/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사생활에 대한 권리

D. 아동에 대한 폭력

- 체벌을 포함한 폭력/모든 형태의 폭력/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유해한 관행(조혼 금지 등)

E.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 가정 환경/가정 환경 상실 아동/입양/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수용자 자녀

F.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 장애아동/건강 및 보건 서비스/정신 건강/청소년 보건/생활수준

G. 교육, 여가 및 문화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H. 특별보호조치

- 난민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이주아동/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인신매매, 불법거래, 탈취/아동사법 행정/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아동의 무력분재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I.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

- 청원절차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J. 국제인권규범 비준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고려

K. 지역 기구와의 협력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여성 및 아동인권 보고와 증진위원회 협력 권고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G. 교육, 여가 및 문화

교육 및 교육의 목표

- 높은 자살률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학업부담, 수면부족,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등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친 경쟁교육 환경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유치원에서의 사교육 의존도(부모의 소득에 따른 차이 유발)
- 취약 및 소외된 집단 아동들의 교육과 학교통합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높은 학교 중퇴율
- 의무교육 권리 보장 반면, 난민, 이주 및 미등록아동의 입학은 학교장에 따라 거부 가능, 미등록아동의 제한적 교육 서비스 접근성
- 장애에 대한 강한 사회적 낙인, 특수학교가 보편적이고 이들의 교육기회 및 편의시설 불충분
-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 아동의 불충분한 지원
- 농촌과 도시 지역 간 교육 격차
- 청소년 임신과 HIV 발병률 증가 관련 적합한 성교육 부족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G. 교육, 여가 및 문화

-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성적 등에 관련 차별
-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여가, 놀이 및 운동 시간 부족과 안전한 무료 시설 불충분으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방치
-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 해소, 장애인, 선주민, 취약 계층 교육 및 직업훈련 평등하게 접근 보장 필요
- 위원회는 경쟁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및 진로상담 강화 등을 위한 공교육 제도 개선 촉구
- 사교육 의존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제 필요
- 모든 아동(출신, 주거지, 등록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주 지위 등)이 의무교육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검토할 것
- 장애아동 통합교육 및 합당한 편의 제공 보장, 장애아동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 노력 필요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주된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G. 교육, 여가 및 문화

- 위원회는 경쟁완화라는 목표 하에 교육과정 다양화, 대학입시제도 재검토 및 진로상담 강화 등을 위한 공교육 제도 개선 촉구

- 학교 중퇴 원인 파악 및 효과적 대응 노력 강화, 대안학교 인식 재고 및 학력 인정
- 교사의 인원 확대 및 훈련 강화, 학교 기반시설 개선 및 예산 증액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청소년 임신 및 HIV/AIDS 예방 유의, 적절한 성교육 제공, 차별적 성 고정관념 표현 삭제
-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과 진로상담과 자유학기제 강화 및 다양화로 아동 견해로 진로 선택 기초 마련
- 성적에 따른 차별 근절, 차별에 대한 효과적 조사,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훈련 제공
- 사이버 괴롭힘 포함 집단 괴롭힘 근절 및 조치 강화, 예방, 조기 발견, 아동 및 전문가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수집과 지침 마련
- 아동 발달의 핵심 요소인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 전환을 위한 인식제고와 대중 캠페인 실시
- 아동의 여가 시간 및 시설 확보와 제공

단국대학교 24

IV. 아동 ·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1. 유 · 초 · 중등 미래 교육 비전
2. 미래 인재상
3. 미래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단국대학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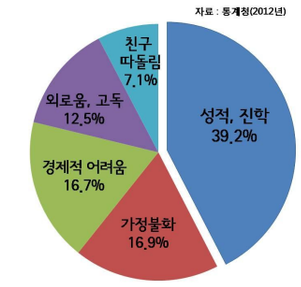
1. 교육은 왜, 무엇을 위해 하는가?(비전/목적)

2.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내용/방법)

단국대학교 26

교육으로 인생의 좌절감, 패배감, 자존감 상실…

13~19살 청소년 자살 충동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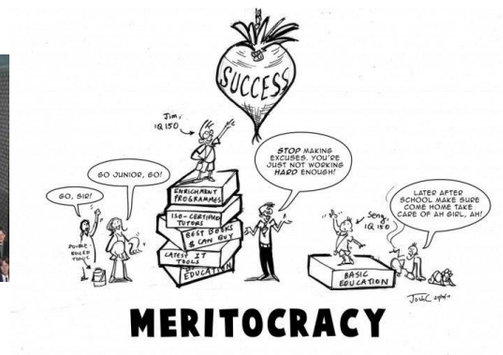


* 잠실대교 위에서 발견된 실내화

단국대학교

교육으로 획일적 인간, 성과주의 만연…





교육으로 사회적 계층 분화, 갈등, 양극화 초래



1. 미래 교육 비전 제안의 배경(우리의 교육은 어떠했는가?)

-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의 본질 회복 및 미래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교육의 사회문화적 가치 재정립 필요
  -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이라는 성과지향적 교육으로 압축 성장을 위한 교육의 "도구화" 및 "수단화 " 교육 패러다임 전환
  - 인권에 근거한 개인의 삶과 행복 추구 및 사회화의 목적을 갖는 교육의 본질 회복 필요
- 국제 사회의 미래교육 움직임
  - 2015 '세계교육포럼' '교육은 특권이 아닌 천부인권',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로 미래사회 혁신 강조
  - 인류 모두를 위한 양질의 포용적 및 포괄적 교육의 중요성과 인류 보편적 가치 추구의 세계시민양
  - European Commission(2017). Strengthening European Identity through Education and Culture. 유럽의 미래교육 비전 11가지 제시
  - 국제기구 보고서 UNESCO(2015, 2016).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 and learning objectives.

2. 유·초·중등교육 미래 비전

모두의 존엄, 다채로운 성장

- 모두를 위한 존엄 교육을 통해 다채롭게 성장하는 학습 사회의 지향
- 존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발견, 개인의 행복한 삶을 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발전의 실현

- '공정한 교육 기회 ' 와 '합당한 대우 ' 제공하는 교육복지 실현하고
-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고유성이 '교육적 가치 ' 로 인정되는 '다채로운 성장 ' 지향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 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2018년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이영희 외)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미래 교육 요구 조사 결과

미래 교육의 비전 및 철학 – 아동 ·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인간(개인/학생) 존엄과 가치 추구의 교육

②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분석 영역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정책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및 해외학자	국제교육 전문가
미래교육의 비전 및 철학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6)			
	·더불어 사는 사회(7)	·	·모두가 상생하는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4)
	· 개인존중교육(4)	·개인존중교육(5)		
	·민주시민 교육(1)	·민주시민교육(4)		
	·배움의 기쁨 회복(4)			
		·인간존중 교육(2)	·인간의 가치에 기반한 지속가능교육(3)	
		·학생중심 교육(4)		·학습자 맞춤형 교육(2)

단국대학교

미래 교육의 비전과 철학 – 예시 인용문

"개인 존중, '인간으로서 존중 받는다 ' 라는 그 이념과 지향 가치는 진작 교육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중략)…만약에 국가가, 학교가, 교육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잘 생겼든지, 못 생겼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가진 잠재력, 타고난 자아 이것을 발현시켜주는 사회이고 교육이다. 만약 이런 신뢰가 있으면 기를 쓰고 그렇게 명문 대학에 보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교수 1)

"(중략) 그런 면에서 저는 2030 시대에 여러가지 변화가운데에서 인간 존중이 강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중략) 그럼 거기에 맞는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중략) 삶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교육정책전문가 6)

단국대학교

3. 미래 인간상

- 인간 질감을 갖춘 전인적인 사람
- 배움을 즐기는 자율적인 사람
- 질문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사람
- 공의식을 갖춘 협력적 사람

- 교육적 투입의 효율성을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기획한 몰개성적, 획일적인 모델형 인재상 지양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 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2018년 국가교육회의 정책연구(이영희 외)

단국대학교

국제교육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시사점

1) 개인의 다양성 및 개별성 존중하는 교육

- 개인의 다양성 존중하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
-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안 활용

인간존중정신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역량 교육
지식 습득이 아닌 실생활에 활용하는 교육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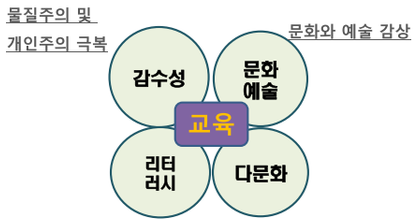
2) 공동체적인 측면의 시민교육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시민교육
더불어 사는	세계시민교육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교육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환경교육

단국대학교

국제교육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시사점

3) 감성과 문화를 강조하는 문화교육



4) 변화 대응 역량 중심 창의·융합교육

- 변화에 대처하는 지식활용력, 협동심, 창의성 함양을 위한 역량교육 강조
- 성취 지향에서 과정과 협력을 중시하는 역량교육
- 창의성 함양을 위한 통합교육
- 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교육





단국대학교

36

4. 미래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주요 정책 과제

정책 목표 1: 학습자의 개별성을 포용하는 교육

- 학생 개개인의 특기 · 적성(잠재력), 취향, 진로인식, 학습속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학습자 고려하는 맞춤형 교육체제
- '다채로운 성장 ' 을 위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방법) 필요
- 자신의 직업 적성을 이해하고,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학습동기체제로 학생의 잠재력 극대화 및 미래 역량 함양

- 가) 교육과정 지배 구조 개편
- 나) 보편적 학습설계 전면화 구축
- 다) 고교 무학년 학점제 실행
- 라) 개별화·다양화 학습플랫폼 구축

단국대학교

37

4. 미래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주요 정책 과제

정책 목표 2: 학교 민주주의 심화 및 학교 자치 실현

- 학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며, 학교구성원의 삶이 민주적 원리와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 가능한 조건 조성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단위학교 권력 주도의 3원적 균형 구조 전환을 위한 법률적 · 제도적 개편 필요

- 가) 교육관련 법률 개정
- 나) 교육3주체 자치 조직 법제화
- 다) 예산 구조 혁신
- 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단국대학교

38

4. 미래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주요 정책 과제

정책 목표 3: 교원 및 학습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 교육력의 핵심 요소인 교원과 학습지원 인력의 '교육자다움' – 학교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교직자가 어떻게 사유하고 행동하고 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와 태도 중요
-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이해 능력', '교육학적 소양', '시대정신', '민주성', '가르침에 관 기술 · 기능적 능력 ' 이 포함
- 교원의 양성 및 선발 시스템, 지원 및 재활력화 체제 구축 중요

- 가) 교원양성 · 선발제도 개편
- 나) 교원인사 및 역량 강화
- 다) 교원 리더쉽 지원 체제
- 라) 초등교과군 전담제 도입

단국대학교

39

4. 미래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주요 정책 과제

정책 목표 4: ' 존엄의 동등성 ' 보장되는 학교제도

- 과학기술의 변화, 학령 인구의 감소, 새로운 인재상의 요구, 교육평등에 대한 사회적 압력 증가, 평생학습 수요 확대 등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학교 제도 및 운영의 시스템 구축
- 현 초·중학교 교육기회 균등성에 비하여 취학 전 교육 및 특수교육, 영재교육,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접근 기회 차별적이며, 인간 발달 및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 반영에 미흡하다는 지적(사회체제 적합성 측면의 조응도 미흡)

가) 취학 전 교육의 공공성과 동등한 출발 보장

나) 학교 간 불평등 해소 정책

다) 교육결과에서 존엄의 동등성 보장

5. 미래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전략



-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학교,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보장되는 학교 모델 구현을 위해 단위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및 교육 결과에 대한 책무성
- 교육주체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현실 문제 인식' 과 '혁신의 철학과 방향 ' 에 대한 '의미의 공유'가 중요

- 지금까지 관료제적 관리로 인한 교육주체의 혁신 동기 상실의 문제, 사회적 합의 절차 없는 정책과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혁신 피로증 유발 등의 문제 극복을 위한 학 · 민 · 관 협력 거버넌스, 학교 3주체가 참여하는 혁신 친화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다자의 교육주체 참여, 자치, 상호 협력, 견제를 통한 최적의 협업 시스템의 구축 및 단위학교의 민주적 발전도 촉진 가능
- 학교구성원의 혁신의지의 톱니바퀴를 만들어 '열정의 공동체 ' 구성과 구성원 모두가 '공동주인 ' 의 역할을 하는 자치학교 전환

- 지금까지의 개혁 추진 방식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체질개선 및 교육관계자의 의식변화의 한계 문제
- 교육주체 참여 수준 및 질 향상 위해 교육주체의 역량 강화하는 자생적 혁신기반 체제전환 가능
- '학생친화형 혁신', '학부모친화형 혁신, '교원공감형 혁신 ' 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교육정책의 여타 사회정책과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병행 추진 필요

1. 미래 교육 비전

1) 교육의 사회문화적 가치 기반의 인간 존엄 중심 교육

-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육 기본 이념 전제로 개인의 존엄과 가치 추구
- 인간 존엄에 따른 개인의 삶과 행복, 배움의 즐거움 추구, 다양한 개인의 차이를 인정

2) 개인과 공동체의 동반 성장 기반의 인간 중심 교육

- 한국사회의 변화 흐름과 교육체제의 연결성 고민,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민주주의 정상화 실현하는 국가적 의제로서 교육 비전
- 교육을 통한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성장 도모

3) 미래 환경 대처하는 창의융합적 역량 중심 교육

-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 및 지능정보화 사회의 사회·경제·환경 변화 대처
- 국내외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 복합문제해결 역량 배양

2. 교육 개혁 추진

1)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바탕의 사회개혁적 교육개혁 추진

- 학습자 개별성 포용하는 교육, 학교민주주의 및 자치 실현을 위한 민주적 운영
- 교육제도의 체제 정비, 교원 및 학습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로 질 관리
- 현장중심, 학생중심 교육혁신을 위한 '의미의 공유'

2)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 학생과 현장 중심의 타당성 있는 추진, 혁신 지속성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조직성 구비, 교육주체의 자치 강화의 자율적 운영,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연관 정책의 병행 추진으로 효율적 관리와 추진 필요
-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주도성 있는 집단(기구) 필요

토의 • 학교와 학생인권

학교에서 아동권리 실현 위해선 정부의 책임감이 필요하다

공현 활동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2011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전개되고 있을 때였다.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고,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측 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자, 일부 교사단체 및 종교단체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나섰다. 몇몇 중앙 일간지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사설, 칼럼 등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이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자유' 조항이 포함된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논조를 취했다. 차별 금지 조항이나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이 문제라고 지목한 내용도 있었다. 반대한 단체는 물론이고 언론사 사설조차도 마찬가지였다.[1] 실제로 2010년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집회의 자유 조항이 삭제된 안이 통과되었던 바 있었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 역시 아동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식인이라고 분류해야 할 언론사의 논설위원들도 마치 아동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해괴한 주장이라는 듯이, 부끄러움도 없이 사설을 발표하고 있었다. 1991년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난 때였다.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물론 그 언론사들일 테지만, 대한민국 정부 역시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협약 내용을 홍보하고 공론장의 기준으로 만드는 일에 얼마나 소홀해 왔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뒤늦게라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리고 실현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에서 나서서 "한국이 가입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기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닐까?

그러나 그로부터 또 8년이 지난 올해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가 경상남도의회에서 부결, 폐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 이들의 주장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는 물론이고 차별금지 조항,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들에 분명히 밝혀진 권리들도 막무가내로 반대했다. 내후년이면 유엔아동권리협약 30년이 되지만, 한국 사회의 아동인권, 특히 학교 안에서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나아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규율이 아동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협약을 준수하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학교에서 머리카락 스타일이나 용의복장을 규제해선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다. 전 세계의 각기 다른 환경의 국가들에 적용되어야 할 협약이니 그러한 디테일함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본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발복장규제는 물론

1) 매일경제 2011년 9월 9일 사설 〈학생집회 장려하는 정신나간 서울교육청 조례〉, 서울신문 2011년 9월 9일 사설 〈학생 인권만큼 교권 보장도 고민하라〉, 동아일보 2011년 9월 9일 사설 〈공교육 무너졌는데 '학생 시위권'이 그리 중요한가〉, 국민일보 2011년 9월 8일 사설 〈서울학생인권조례, 무책임의 극치〉, 국민일보 2011년 12월 20일 사설 〈서울학생인권조례 재고하라〉, 헤럴드경제 2011년 9월 9일 사설 〈학생인권조례 서두르는 서울시교육청〉, 문화일보 2011년 10월 20일 사설 〈동성애까지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안, 폐기하라〉 등

이요, 한국의 초·중등학교의 현실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한다고는 볼 수 없는 관행과 규칙, 운영 방식이 수두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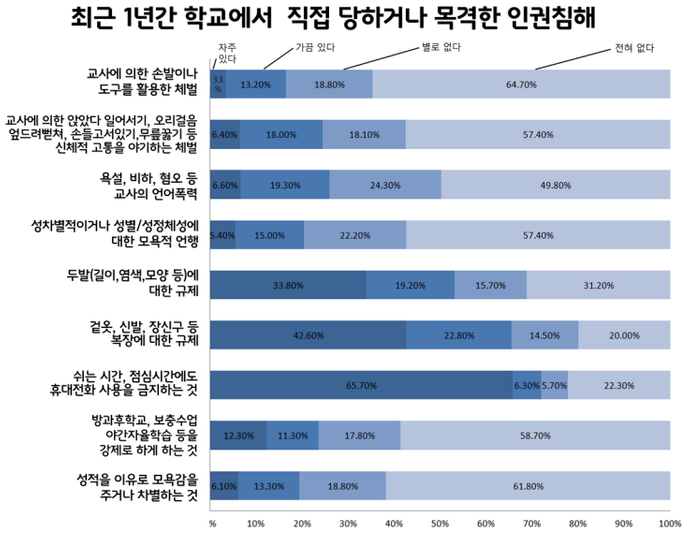
아주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아동인권 이슈인 체벌 문제를 보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1차 심사 이후 최종 견해에서도 체벌 금지를 권고했던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무렵 학교 체벌 금지를 검토하긴 했으나 철회했고, 교육부는 비록 체벌을 억제하려는 것이 기본 입장이긴 했으나 체벌에 쓰이는 도구를 정의하고 가격 횟수와 절차 등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실상 체벌을 합법화했다.

10여 년이 지난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를 선언하자 정부는 그제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체벌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제31조 ⑧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에 대해 2011년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학생을 직접 때리는 형태의 체벌만 금지한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체벌(소위 ‘간접 체벌’이라는 기괴한 개념!)은 허용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교육부가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체벌의 대안이라며 제시한 ‘상벌점제’는 어땠나? 체벌이 금지되지 않아서 체벌도 당하고 벌점도 받는다는 학생들의 호소가 한동안 이어졌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상벌점제 자체도 많은 문제를 낳았다. 교사의 자의적인 벌점 부과, 징계 및 퇴학의 증가 등이 여러 학교에서 고발되었다. 사소한 지각이나 용의복장 규정 위반, ‘교사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벌점이 누적되어 중징계로 이어지곤 했다. 학교의 규칙이나 문화를 인권 기준에 부합하게 바꾸어 나가고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체벌’이라는 처벌 수단만 ‘벌점’으로 대체한 결과였다.

당연하게도, 체벌만이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함부로 다루어지고 규제되고 있다. 학생의 사적 소지품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규율하고 압수하고 파손한다. 수업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들의 연애 등을 규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규칙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육적 목적이라는 핑계나 학업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이런 학교 규칙들은 1960-80년대, 군사 독재 시절 생겨났던 내용들도 많은데, 사회의 민주화는 진전되었음에도 학교 규칙과 문화는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관으로 변화하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에는 여전히 학생의 인권 보장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부처 하나 제대로 없고, 학생인권 같은 사안은 학교의 자율 사안이라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법률이나 시행령 등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고,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은 전국 4개 지역에 불과함에도 조례로 각 지역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어쩌다가 학생인권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아도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은 무관심하다. 예를 들면, 추운 계절에도 학생의 겉옷 착용을 학교에서 단속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가 ‘과도한 겉옷 단속 등을 하지 마라’는 공문을 내보냈지만, 실제로 겉옷 단속 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처는 전혀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금지한 때리는 형태의 체벌조차도 학교에서 상당한 빈도로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2019년 11월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도 체벌 경험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는 응답이 상당수 나오는 등 각종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나타났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전교조가 2019년 11월 1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중

이와 같이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에 무관심했던 것이 제5·6차 최종견해에서도 학생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권고가 반복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모든 아동이 성적과 관계없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으며,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유의한다. 위원회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해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라고 지적했고, “모든 지역과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징계적” 처벌을 포함해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권고” 했다. 또한 아동의 참여에 관해서도,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적이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동의 의견이 청취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가 그들과 관련된 가정, 학교, 법원 및 관련 행정 절차와 기타 절차에서 정당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3·4차 권고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의미 있는 참여를 포함하여 학교 안에서 정치적 권리 보장과 참여의 권리 증진을 권고했던 바 있다.

국가의 의무

학교 안에서의 학생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의 학교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적지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이번 제5·6차 최종견해에서도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 을 또 한 번 지적한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와 교육의 목적에 대한 규정 등에 비추어 한국 교육을 재검토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교육부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 권고 등에 근거하여 한국 교육 체제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TF라도 만들었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들에는, 교육에 관련하여 이러한 지적이 있다.

“지식의 축적, 경쟁의 촉진 및 아동에 대한 과도한 업무의 부담에 초점을 맞춘 교육의 형태는 아동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의 최대한의 발현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일반논평 1 교육의 목적)

“세계 여러 곳의 많은 어린이들이 공식적인 학업 성공에 중점을 두어 제31조에 따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일반논평 17 휴식, 여가, 놀이, 레크레이션 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한국 정부는 과연 이러한 지적과 인권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육 체제와

학교 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한 계획을 만들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학생들의 숱한 호소에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마음대로 할 문제'라고만 해 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은 (……)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책임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내놓을 셈인가 답해야 할 때이다.

토의 ●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제언

구본창 정책국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지속적인 권고 내용은 대학입학 경쟁으로 인해 공교육 내 학습은 물론이고 사교육을 통해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라는 것임. 특히 9월 18, 1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국가보고서 심의 현장에서 대한민국 심의 코디테이터를 맡은 아말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고 꼬집으며 과도한 학습 시간으로 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대한민국 아동의 현실을 개선할 것을 촉구함. 이와 관련해 국내 상황, 그간의 시민단체의 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사항을 제시함.

1) 국내 주요 이슈현황

① 3년 연속 사교육비 폭증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1만원으로 집계됨.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27.2만원을 또 다시 갱신함. 이는 전년대비 7.0%, 1.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 또한 역대 최고

임. 2천원, 3천원 오르는 사교육비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에 1.2만원이 올라 25.6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전 정부와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2017년 사교육비는 2016년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 전년대비 1.6만원이 오른 27.2만원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은 전년대비 1.9만원이 오른 29.1만원으로 나타난 것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부재를 의미하며, 인권 침해 수준의 사교육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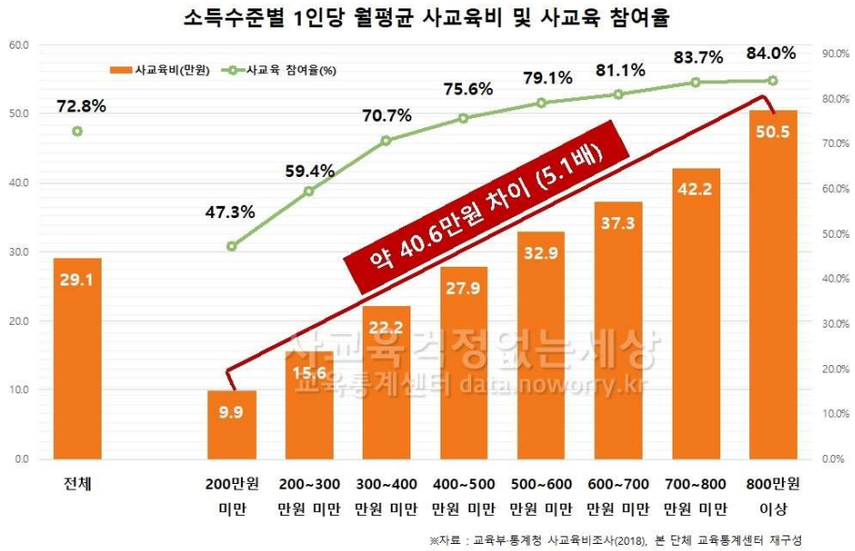


<역대 정부의 1인당 사교육비 전년대비 증감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증감	1.1(+)	0.9(+)	0.2(-)	0	0.4(-)	0.3(+)	0.3(+)	0.2(+)	1.2(+)	1.6(+)	1.9(+)

②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양극화

통계청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결과를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과 가장 높은 계층과의 사교육비 격차가 5.1배로 명확한 교육 양극화가 확인됨.



③ 고교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문제와 교육 양극화

고교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 참여, 사교육비 지출과 선행학습 정도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함.

자율고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평균은 모두 증가함. 특히 중학생의 경우 자율고·특목고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4.6%에서 77.8%로 더 높아졌으며, 이들의 사교육비 평균 역시 53.8만원에서 57.4만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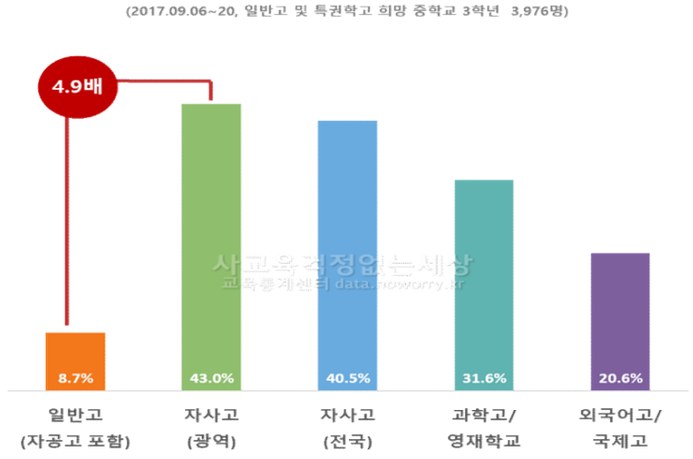
<자율고·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및 평균 사교육비>

학교급	년도	특목고·자율고 희망자 비율	특목고·자율고 희망자 사교육비 평균	특목고·자율고 희망자 사교육 참여율	특목고·자율고 희망자 사교육 참여 학생 사교육비
초등학교	2015	28.8%	28.4	85.8%	33.1
	2016	31.4%	30.0	84.9%	35.3
	2017	26.8%	32.2	87.4%	36.8
중학교	2015	20.4%	39.0	79.9%	48.8
	2016	20.3%	40.2	74.6%	53.8
	2017	17.7%	44.7	77.8%	57.4

[출처: 박경미 국회의원, 2018.10.11]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 학생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 40.5%,△광역단위 자사고 희망자 43.0%로 일반고 희망자 8.7%에 비해 최대 4.9배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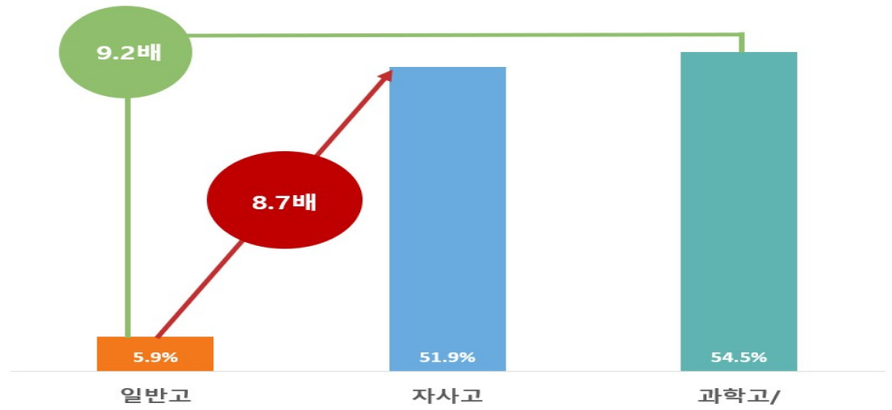
<희망 고교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 (중3 대상) >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중3 학생들의 고2 수준 이상 수학 선행사교육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이 51.9% 로 일반고 5.9% 대비 무려 약 8.7배, 고2 수준 이상 영어 선행사교육 비율도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이 49.3%로 일반고 10.8% 대비 약 4.6배 차이가 남.

<고2 수준 이상의 수학선행사교육 비교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④ 교육과정과 부합하지 않는 대입제도 결정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예상

통계청의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교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6만원이 오른 32.1만으로 가장 높음. 이는 작년 8월에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학종 개선 미흡, 정시 확대 기조 유지)가 사교육 유발 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된 2019학년도 수능의 영향임. 따라서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 및 수능 문항 출제 시 고교 교육과정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의 즉시 처방은 물론이고 입시 경쟁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입제도를 모색해야 함.

2) 시민사회의 노력과 활동

-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 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학원 휴일 휴무제 및 학원 심야영업 단축 관련 운동/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학교 폐지 운동/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촛불시민행동
- 영유아 인권법 제정 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수능 절대평가 등 미래 역량 중심의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국민운동
-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관련 운동

3) 제안사항

①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정서 발달을 위해 사교육 학습 시간을 제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

② 청소년의 건강권과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및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률 입법

③ 미래지향적 고교체제 개편,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 교육을 통한 미래 혁신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④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해야 함. (대학입학 보장제, 공동입학제, 궁립대 공동입학전형 추진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⑤ 초중고 교육을 지식 암기 중심에서 미래 역량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교육을 내실화해 입시경쟁을 위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⑥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교육부 및 민간 합동 ‘사교육 경감 특별 기구’를 설치해서 이와 관련된 정부 대책안을 깊게 숙의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요구됨.

토의 ● **학교·가정 밖 청소년 지원**

학교·가정 밖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

송지은 변호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들어가며

2019. 9. 27.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제5-6차 심의과정에서 NGO 보고서 제출, 사전심의 및 본심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지난 제3-4차 최종권고에 비해 아동 인권 이슈가 보다 폭넓게 다루어지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밀한 이슈들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이주아동의 조혼, 수용자 자녀, 구금된 아동 처우 등). 한편으로는 8년 전 권고사항이 조금도 이행되지 않아, 이전과 동일한 권고가 반복되거나(차별금지법 제정, 보편적 출생등록, 체벌 금지,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사교육 경감 등) 어떤 이슈들에서는 오히려 8년 전보다 후퇴한 아동 인권수준으로 인해 최종권고 역시 기본적인 수준에 그치게 되기도 했다(정치적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아동의 생명 생존권도 여전히 절박한 현실에서, 발달과 참여의 권리 논의가 더 확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학교·가정 밖 아동청소년은 생존권 보장의 영역에서부터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특유의 상황이나 정체성을 고려한 특별한 조치가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1. 자원의 할당 (Allocation of resources)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 관련 예산이 GDP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면서 (1)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2)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할 것, (3)현존하는 아동·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아동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학교·가정 밖 아동을 위한 예산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정되고 있는지, 그 목표가 학교·가정 밖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정 밖 아동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2005년 제정)에 근거하여 주로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제도, 그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고 있을 것인데, 2015년 대비 2018년에는 전국 청소년 쉼터의 수가 더 늘었으나 쉼터 1개소 당 사업비는 1,340만원이 감축되었다[2]. 한편으로는 2016년 한 해 청소년쉼터를 찾은 2만 9256명의 청소년들 중 55.9%가 무단이탈, 자의퇴소, 무단퇴소 등 제 발로 쉼터를 나갔으며,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퇴소 후 진로추적이 가능한 경우는 41.1%에 그쳤다고 한다.[3] 결국 현재 한국에서 가정 밖 아동에 대한 주요하고 유일하다시피한 지원방식인 청소년 쉼터는, 운영에 충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문제와 동시에 전체의 절반 이상의 가정 밖 아동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모순된 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 밖에도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만 18살 이상이 된 보호종료 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지원 수준이 좌우되는 상황[4]이다.

- 가정 밖 아동에 대한 지원에 책정된 예산을 감축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 또한 가정 밖 아동 지원의 방향을 오로지 '시설 내 수용'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아동에 대한 (시설이 아닌) 주거지원, 자립지원을 연구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치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 책정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지 않는 탈가정 아동의 경우 탈학교 상황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이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몰라서, 생계유지가 더 급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이 배치되어야 한다.

- 한편, 아동·청소년 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중 학교·가정 밖 아동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의 참여와 활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교·가정 밖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아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비마이너, "계도 대상이 아닌 자립 주체로서의 탈가정 청소년", 2019. 11. 6. 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25&thread=04r01), 2019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 자료제공 내용 참조
3) 위 글, 2017. 11.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제공 내용 참조
4) 한겨레, "광주 0원, 울산 500만원… 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금 천차만별, 왜?", 2019. 4. 23.

2. 아동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Children)

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가 부족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할 것 및 위 모든 조치에 있어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아동을 가정·학교 밖으로 내모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인식개선 및 교육이 강화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아동이 가정 안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동이 직접 학대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아동의 의견은 무시되고 학대행위자의 편을 드는 일이 여전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간, 종사자간 편차가 심해 피해 아동이 효과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알로에: 아빠한테 맞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경찰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력이라며 불기소처분 내렸어요. 8월 27일이었어요. 그 경찰은 그 전에 다른 일로 아빠를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때 본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폭력이라고 했어요.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이 가잖아요. 아보전에서 처음 나왔을 때 저랑 경찰서에 동행한 게 아니라, 편한 장소라며 데려가서는 얘기 나눈 후 다음에 연락 주겠다며 돌아갔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아빠가 사 준 거 다 두고 나가라고 해서 정말 전부 다 두고 나왔어요. 그때 제가 친구 집에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보전한테 아무런 연락이 안 왔어요.
>
> 경찰이 쉼터에 연결해 줘서 쉼터에 갔는데 1주일도 안 돼서 나왔어요. 학교도 자퇴하고. 또 다른 쉼터에 갔을 때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아보전에 연락해 달라고 해서 그 쉼터에서 다시 아보전 사람과 상담했어요. 또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쉼터에 갔는데 거기서도 아보전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아보전은 19살 생일이 지나면 관계가 끊겨요. 그 후 아무런 연락 없이 아보전과의 관계는 끊겼어요. 아보전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비마이너, "탈가정 청소년들의 거리 생존 분투기", 2019. 11. 5. 자[5])

- 아동 학대 발생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하였다.

3. 가정환경 상실 아동

위원회가 권고한 (1)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위탁양육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고,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을 것, 가출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등의 과제가 즉각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여가부 추산 연간 '가출 청소년'(탈가정 아동) 수는 27만명 정도인데, 전국 청소년쉼터는 연인원 3만 2천여명만이 이용할 수 있다[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청소년쉼터마저도 탈가정 청소년의 55.9%이상이 택하지 않는다.

-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운/입소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거부당하는 아동청소년(예:트랜스젠더 아동청소년 등)들에

5)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19
6)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492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최종권고에서 이에 대한 권고가 도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한국은 탈가정 아동을 홈리스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가정 밖 아동의 지원은 주로 시설을 기반으로만 설정되어 있어, 가정이나 시설에 편입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정부의 어떤 지원범위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실제로도 대부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운영되는 전국 모든 쉼터가 모든 아동이 적절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연구, 예산 책정이 되어야 한다.

- 탈가정 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연구하여야 하고, 필요한 예산 책정이 되어야 한다.

4. 교육여가 문화

위원회는 정부의 학교 밖 아동 지원정책을 환영하면서, (1)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학교통합에 대한 제한된 접근 및 이들 아동의 높은 학교 중퇴율, (2) 난민아동, 이주아동 및 미등록아동의 학교 입학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 미등록 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3)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4)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불충분한 진로상담으로 중퇴에 대한 취약성 증대 등에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권고 중에는 학교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할 것을 권고하면서, 차별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다룰 것,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할 것이 제시되었다.

- 아동의 탈학교 배경에는 취약하거나 소외된 집단이라는 정체성, 학교에서의 차별,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다양하게 존재함을 인식하고 학교 교과과정의 인권교육, 특히 반차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행 되어야 한다.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을 상담하기 위한 '위클래스' 종사자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므로[7][8], 위클래스 등 학교 내 상담센터의 운영실태 및 학생 만족도를 조사하고, 종사자들에 들에 대한 아동인권교육, 소수자 인권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난민, 이주 및 미등록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교재지원과 같은 제반상황에 대한 지원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아동인권침해가 교육청 등의 권한으로 조사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7) 경향신문, "'스쿨 미투' 학생이라 만만했나요?'", 2018. 11. 3. 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031410001&code=940100)
8) 비마이너, "탈가정 청소년들의 거리 생존 분투기", 2019. 11. 5. 자.

MEMO

MEMO

Session 2

모든 아동을 위한 포용국가

발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

김진석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들어가며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지난 9월 27일 발표되었다. 위원회가 지난 2011년 9월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한 이후 8년 만에 발표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다양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없지 않았으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한 영역에서 여전히 미흡하거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제5-6차 국가보고서는 지난 2011년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위원회가 발표한 이후 2012년부터 우리 정부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2017년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영역에서 우리 정부가 수행한 아동인권 관련 진전사항을 정리한 보고서에 해당한다. 이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자와 현장 종사자, 그리고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이다[1]. 이런 경과를 고려했을 때 제5-6차 국가보고서는 우리나라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지난 6년 동안 정부와 우리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보고서의 제출과정을 살펴보면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기한인 2017년 6월을 넘겨 같은 해 12월에야 제출하는 등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에 우려를 품게 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또한 보고서는 보고서 준비 및 제출과정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출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가장 최근 개최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본회의가 2016년 3월에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2], 사실상 서면회의나 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5-6차 국가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이와 같은 정황들은 보고서의 존재 이유인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아동권리에 대한 정부의 낮은 관심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려를 자아낸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보고서의 목차에 맞춰 위원회의 권고사항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공공의 책무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일반이행조치

법령 제·개정

> *"위원회는 또한 사법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의 협약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그들이 재판절차에 협약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당사국에 권고한다." (최종견해 7항)*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

1) 대한민국정부. 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82138005

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법원판결에서 협약이 원용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3].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경찰행정 담당자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과정 내에 아동권리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와 더불어 '아동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 등의 제정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에서 촉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 나아가 국민, 노인, 청소년, 여자, 장애자 등과 달리 '아동'이 언급되지 않는[4] 헌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정의와 고유한 권리, 그리고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정책 조정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할당, 영구적 사무국 설치 및 아동권리 조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인지도 증진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견해 9항)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제3-4차 보고서에서도 기능강화가 권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기능강화를 위한 재구성을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실제로 사무국과 같은 상설전담실행기구도, 별도의 예산도 확보되어있지 않다.
- 정부보고서[5]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동안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단 1회 서면으로 열렸을 뿐이다.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82138005
4) 아동의 개념과 연결된 개념으로 헌법 제31조제2항에 '보호하는 자녀', 제32조제5항에 '연소자' 등이 언급되고 있다.
5) 행정안전부. 2018.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 및 전담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아동권리 업무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정기적 개최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사무국 등 전담인력 및 실행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7조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업무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재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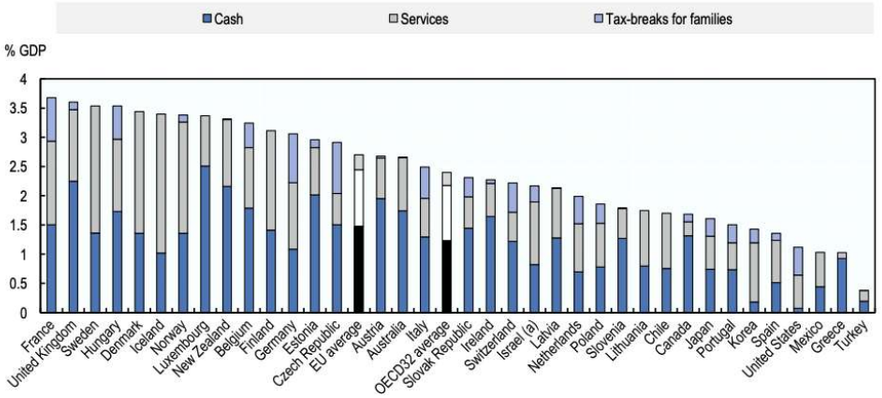
자원의 할당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 (최종견해 10항)

"아동을 위한 예산 및 전반적인 사회복지지출을 GDP에 비례하여 증가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를 감소시킬 것;" (최종견해 10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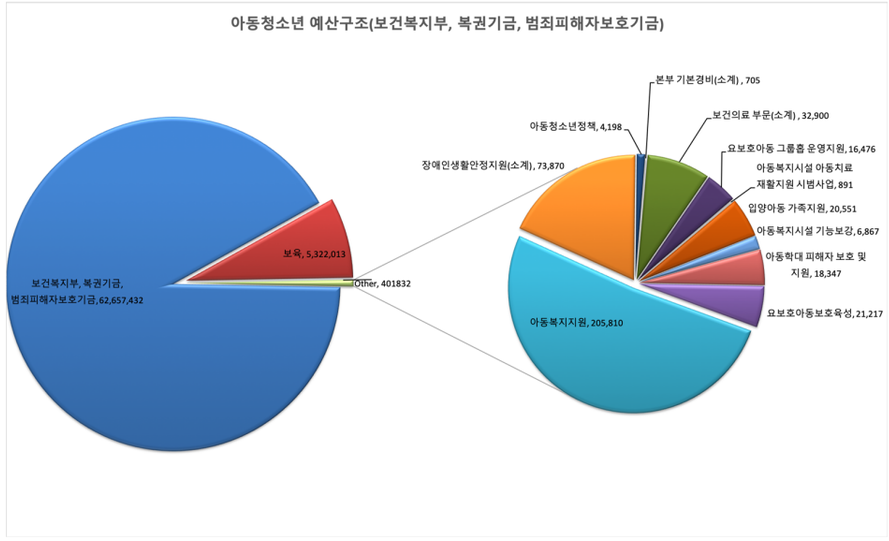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아동관련 자원의 할당은 그 총량과 형태에 있어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아동 및 가족관련 사회지출의 현황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아동 및 가족관련 사회지출은 GDP의 1.5% 수준으로 OECD 전체 평균 2.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래 그림 참조[6])

6) 출처: http://www.oecd.org/els/soc/PF1_1_Public_spending_on_family_benefits.pdf



- 2017년 우리나라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서 아동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며, 아동관련 예산의 90% 이상이 보육정책 수행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아동복지 관련 예산의 나머지 10%는 다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51%를 차지한다. 또한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아래 그림 참조).[7)]
- 우리나라 아동 및 가족관련 사회적 지출의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특히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복권기금이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같은 기금으로부터 충당하는 현재의 예산구조를 벗어나 복지부를 포함한 관련부처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7)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아동수당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 및 가족관련 사회지출의 규모는 2015년에 비해 2조 원 가량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0-6세에 한정됨에 따라 보육과 더불어 0-5세에 대한 집중적인 지출 구조는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반원칙

비차별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최종견해 16항)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법, 정책, 활동을 증진하 는 등의 노력을 포함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SDG 목표 10.3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을 통해 출신 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최종견해 17항)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차별금지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소위 '노키즈존' 등 아동일반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움직임이 사회전반에 걸쳐 감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포괄적 정책, 심리적·교육적·사회적 조치, 아동 및 가족, 나아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통해 아동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근 본원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최종견해 20항)

- 우리나라 아동 사망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교육, 심리,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편적 개입이 필요하다.
- 아동에 대한 개입의 경우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3. 시민권과 자유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지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할 것;" (최종견해 22항)

- 어떠한 차별도 없이 출생과 함께 아동이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 모든 아동은 출생등록과 함께 공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안에서 아동의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가족구조의 특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특히 어떠한 형태로든 유기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 및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조치가 준비되어야 한다. 2016년 가족관계법 개정에 따라 검사나 지자체장이 직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미등록자나 미신고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부재하다. 2018년 시행된 온라인출생등록제 역시 부모가 고의나 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8].
- 이와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8년에 시행된 온라인출생등록제를 전국의 병원과 조산원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 등을 통해 출생등록이 된 아동이 일정기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나 복지부가 모니터링하는 방식 등을 통해 유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4.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 및 전략의 부재;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심리학자, 변호사의 부족; " (최종견해 26항)

- 간접체벌과 굴욕적인 처벌 등 정서적인 체벌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일체의 폭력적인 훈육방법을 금지하는 조항을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안에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법안의 마련과 더불어 교사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사인력에 대해 아

8)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6차 시민사회 연대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의해 출생등록이 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는 출생신고 과정에서 확인을 위해 활용될 뿐 출생신고를 강제하거나 필수적인 과정으로 지정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동학대 등 일체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 및 폭력피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이 학대아동 및 가족의 지역사회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지원기관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 학대피해사례의 조사부터 개입, 지원,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과정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아동학대관련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라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위한 단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뿐 아니라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그루밍의 증가를 포함하여 성폭력 및 성적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 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최종견해 28항)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최종견해 29항)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원 양성 및 연수과정에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에 연관된 모든 아동은 모두 '피해자'로 구분하고, 성적 착취와 학대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5.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부(父)의 육아휴직 접근성 및 이용을 보다 촉진할 것;" (최종견해 31항)

-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육시설 등 돌봄 시설과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과정에 부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육아휴직 후 복귀시 업무적응프로그램 운영 등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 특히 성평등적 양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남성육아휴직 쿼터제 등 남성육아휴직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 또한 현재 자영업자가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기 위해 스웨덴식 부모보험 등의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 는 것을 보장할 것" (최종견해 36항)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 가능성을 개선할 것;" (최종견해 37항)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최종견해 40항)

-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도록 한다.

7. 교육, 여가 및 문화

"아동 발달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 기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중 캠페인을 실시할 것; 모든 아동이 스포츠를 포함하 여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놀이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할 것." (최종견해 42항)

- 학업에 대한 과도한 강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압력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휴식과 놀이, 여가는 공부에 대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휴식과 놀이, 여가가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관점과 태도가 전 사회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기 위한 대중 캠페인이 필요하다.
- 학령기 아동의 경우 휴식과 놀이, 여가시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과도한 학업, 특히 경쟁적으로 시간과 자원을 투여하는 사교육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연령별 사교육 일몰시간제나 사교육 총량제의 도입 등 아동을 과도한 학업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반 인프라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놀이시설, 공원, 수영장, 체육관과 같은 인프라의 설치와 운영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나가며

지금까지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살펴보고,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의 책무를 정리하였다. 이 발제문을 활용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언급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위원회는 보고서의 서두에 특히 비차별,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 학대, 교육, 그리고 소년사법의 분야에서 특히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제문은 이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분야들 가운데 소년사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을 다루고 있으나 일부 주제의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토론자의 토론에 의해 보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9].

둘째, 본 발제문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최종견해 보고서의 목차별로 각각의 영역에서 공공의 책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이글의 독자들은 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밝힌 바와 같이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권리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즉, 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권고사항들은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실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글에 제안된 공공의 책무 실현을 위한 과제들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당장 이행하기에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우리사회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놓치고 갈 수 없는 과제들이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2024년 12월 19일까지 제

9) 소년사법과 관련한 내용은 필자의 전문성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토론자들 가운데 해당 영역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보완할 것을 기대한다.

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24년 제7차 국가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와 우리 사회의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담기길 기원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MEMO

토의 • 양육자지원 및 아동돌봄서비스

무너진 공적 돌봄: 연약한 이들이 처한 차별적 돌봄 현실

김정덕 공동대표
(정치하는엄마들)

양육자로서 살아내고 있는 한국은 거대한 아동학대방임 국가다.
이 나라 아이들의 인권 실태를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복기하며 살펴보려 한다.

○ 빈곤 가정 (관악구)

지난 10월 한씨는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수당 신청을 직접 했으면서 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이가 만 6살이 넘은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원은 중단됐고, 한씨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명숙씨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애를 맡길 곳이 없었을 것이다. 한국 사람은 보통 친정 등에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탈북자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은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1)]

양육수당은 선별적 복지제도로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아동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은 10만원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제도로 0~5세(최대 72개월)에게 모두 지급되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아이의 엄마는 북한이탈주민이었고, 아빠는 중국국적 외국인이었으며, 엄마와 아이 사망 당시 아빠는 중국에서 오지 않은 채 엄마 홀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통일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탈북자협회 중 어떠한 공적 네트워크도 이들에게 작동하지 않았다. 사람을 돌보는 사람도 사람이다. 오롯이 한 사람에게만 전가되는 돌봄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위험한 환경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씨의 아이는 만6세여서 양육수당만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정부 보육료는 만0~5세까지여서 아이가 기관을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아이는 양육자의 물리적, 재정적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존재로 희생되었다. 만약 아이가 돈 걱정 없이 취학 전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이와 엄마가 새로이 연결되어 닿게 된 사람들- 보육교사, 아이의 친구, 주변 양육자, 이웃들 누구든 취약해진 아이와 엄마의 얼굴을 가까이 마주보고 손 잡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공적 돌봄이 사라진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방임은 결국 학대적 상황에 이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

○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사건 (광주)

"자거라 자! 이놈의 XX 왜 못 자냐."
한 여성이 갑자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누워있는 아이를 이리저리 세게 흔들고 등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번에는 마구 흔들고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에 대한 폭행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본 아이 부모는 산후도우미 59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2)]

1) 탈북 모자의 죽음, 두 달간 아무도 몰랐다 (한겨레, 2019. 8.1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709.html

양육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산후도우미를 소개받았다.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복지제도이다. 출산한 지 30일이 안 되고 기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인성에 관한 기준이나 교육은 거의 없다. 산모 영양관리 등 60시간의 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은 없고, 폭력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도 없다.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재취업을 제한할 길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금천구)

아이가 돌보미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눈치챈 건 서비스를 이용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달 중순이다. “지난달 13일쯤 아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안 먹으려고 했어요. 밥 숟가락을 거부하며 물건을 던지길래 ‘이러면 안 돼요’라고 가르쳤죠. 그러더니 아이가 대뜸 자기 뺨을 직접 때리는 거예요. 아이 행동이 이상해서 평소 집안에 설치돼 있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아이 돌보미 B씨가 아이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밥을 안 먹을 때마다 아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됐는지 아이가 자기 뺨을 스스로 때리는 것이었어요. 이후 지난 3개월간 영상을 모두 되돌려 보며 학대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한다. 촬영된 영상 속에서 B씨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고개를 젓는 아이의 뺨을 때렸다. 아이가 재채기하자 납작한 물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때리고 볼을 꼬집기도 했다. B씨는 아이가 음식물을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먹였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뒤로 넘어져 B씨를 피해 엉금엉금 기어 도망가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부모는 “더 많은 학대가 있었지만, 분량 때문에 모두 포함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저희 앞에선 아이를 지극 정성으로 돌보고 있어서 학대를 할 거라곤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3)]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10여 개 발의됐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결격사유·자격취소 사유 등을 강화하고, 돌보미의 범죄경력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채용 시 인·적성 검사도 치르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취지다. 직업선택 자유·기본권 침해 등 쟁점이 있지만, 사건 발생 당시만 해도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활발한 논의가 기대됐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사건의 끔찍한 범행 장면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되자 보건복지부는 즉각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대책은 나왔지만 아이돌봄처럼 예방대책으로서는 미비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는 허술한 자격 요건, 인·적성 검사 없이 자격 취득, 아동학대 교육 미실시, 산후도우미에 대한 자격 제한 요건 미비 등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힌다.

정부 지원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이다.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을 근거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이용 금액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양적 질적 돌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아동 학대 사건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한 마음에 사설업체 대신 정부 지원 사업이라 믿고 신청을 했던 이 양육자들은 끔찍한 아동학대를 겪게 된 것이다.

2) 생후 한 달 아기 흔들고 던지고…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MBC 2019.11.1.)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73934_24616.html

3)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피해 엄마 “맞는 게 습관 된 내 아기”(한국일보 2019.4.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21763779116

당시 여성가족부는 관련 개선 대책을 내놨다. 아이돌보미를 선발 시 인·적성검사 실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격정지·취소 처분 강화 등이 핵심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돼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하지만 11월에 일어난 광주의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을 막지 못했다. 예방대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에는 관련 대책이 '아이돌보미'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정식 명칭인 산후도우미는 보건복지부가 관할 부처다. 일선 기초지자체 관리 부서도 보건소(산후도우미)와 복지과(아이돌보미)로 이원화돼 있다. 관련법도 달라 아이돌봄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 등에 자격 제한 요건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으나, 산후도우미는 '모자보건법'과 '사회서비스이용법' 등에 추상적인 근거 조항만 있을 뿐이다. 산후도우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 규정되는 실정이다. 전형적인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다. 보육-어린이집-보건복지부, 교육-유치원-교육부로 이원화된 아동기의 혼란과 차별과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보건복지부로 이어지는 행정에 편리하도록 파편화된 제도들은 전혀 안전하지 않아 권리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양육자와 더불어 아동을 돌봄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전인적 통합적 행정이 필요하다.

좀더 시야를 넓혀보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은 단순한 인적성 검사로는 결코 담보되지 않는다. 아이돌보미, 산후돌보미는 대부분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노동과 살림노동이 경제적 급여 체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현실로 시간제 경제활동을 위해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엄마역할' 프레임으로 저임금을 합리화시키는 노동구조에서 속에서 엄연히 전문적 소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전문직들은 사회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다. 돌봄노동을 '애나 보고 밥이나 한다'며 천시하는 저열한 사회인식 개선은 관련 행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들의 심리적, 물리적 안정감이 돌봄의 질을 절대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돌봄 직업군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구)

> 대구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밥을 먹고 있는 4살 A양에게 다가가더니, 팔을 꺾어 들고 있는 숟가락을 뺏습니다. 급기야 먹던 식판까지 가져간 선생님. A양은 다른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선생님은 A양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기기도 했고, 밥을 먹는 도중 A양의 얼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날엔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A양의 하의를 모두 벗겨 화장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A양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발생한 일들입니다.[4)]

피해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한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아이가 '엄마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문화니까…'너무 쉽게 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4살 반엔 A양을 포함해 총 1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학부모 12명은 지난달 7일부터 약 2주 동안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크고 작은 아동학대 정황들을 확인했고, 지난 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담당 보육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만약 위 양육자가 느낀 것처럼 교사가 아동에게 다문화 혐오정서를 표출했다면 정말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함께 목격한 아이들도 트라우마 치료에 적극 힘써야 하는데, 정부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더불어 아이를 학대해도 방임, 방관하는 분위기일 가능성이 높은 보육현장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4) 4살 아이 팔 꺾고 숟가락 뺏고…수사 착수(MBC, 2019.11.10.)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587756_24616.html

한 명의 잘못이 아닌, 교직원 모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보육현장에서부터 시급한 현실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지는 아동학대 소식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되었다고 하나, 이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현실의 일각이다. 이런 정황이 CCTV로 인해 더 많이 밝혀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무감각해진 기계적 감시로 더 이상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위 사건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동안 주변에 제지할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인데, 모두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하루 종일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가 영유아 개개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해선 기관의 커리큘럼 변화나 교사 개인의 인권감수성 못지않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인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5세 20명이다. 이 아이들의 수만 보더라도 아동에 대한 충분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 아이를 온전히 돌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체감하는 문제다. 보육교사는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이 긴장하며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돌봄노동자이다. 0세 갓난 아이를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홀로 돌보는 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일이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돌보아야할 아이가 셋이라면 심리적 번아웃 상태로 신체폭력이나 방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학대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인성, 자질, 전문성 모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금 같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는 아동의 놀권리, 건강할 권리, 충분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표 10〉 유치원과 어린이집 연령별 적정 교사 대 영유아 수(안)

	어린이집	유치원
0세	1 : 2 (현행 1:3)	-
1세	1 : 4 (현행 1:5)	-
2세	1 : 6 (현행 1:7)	-
3세	1 : 11 (현행 1:15)	1 : 13 (현행 1:16)
4세	1 : 15 (현행 1:20)	1 : 17 (현행 1:24)
5세	1 : 16 (현행 1:20)	1 : 21 (현행 1:28)

주 1) 유치원은 일일 4-5시간의 교육과정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어린이집은 12시간 종일반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함.
주 2) 유치원의 현행 기준은 전국 시·도교육청 연령별 공립 학급 정원 기준을 평균한 수치임.
자료: 김은설·이재희·박은영·김정숙(2016). 영유아 교육·보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59.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의 기준 선정이 필요하며, 교사 1인당 0세의 경우 2명, 1세는 3명, 2세는 5명, 3세는 11명, 4세 15명, 5세는 16명가 적절하다는 연구결과를 냈다.[5] 전체적으로 전문가 조사 결과 어린이집 영아반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교사 대 영유아 수를 1명, 유아반의 경우는 각 연령에 따라 3명~7명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아동 돌봄의 질은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극대화된다. 아이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표정을 살필 수 있어야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부처가 꼭 제도적의 구심점으로 삼아야할 명제이다.

○ 사회구조적 차별되는 아이들의 발달권 : 어린이집 금식판 VS 흙식판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침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1일 급간식비(급식1+간식2) 기준은 22년째 1,745원이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44.4% 상승했으니 1,745원은 동결이 아니라 775원 깎인 셈이다. 22년 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정녕 아이들을 위

5)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 (이재희·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2017)

한 정치는 없었던 것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별 급간식비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 결과 전체 3분의 1에 달하는 80여개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0원이었고, 이 지역의 어린이집 영유아들은 하루 1,745원짜리 부실한 급간식을 먹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높은 충북 괴산군(1,190원)은 지원금 포함 하루 급간식비가 2,935원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국공립유치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급간식비 지원금이 1,000원이 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곳뿐이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전수조사 결과는 차별적인 상황을 더 극명하게 보여준다. 조사 결과 1위는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으로 하루 급간식비가 무려 6,391원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5위는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순이었고, 보건복지부 3,862원, 대통령 비서실 3,800원, 국회 3,800원으로 집계 되었다.

300여개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20개 기관에서 하루 급간식비가 4,000원 이상이었고, 가장 낮은 곳도 2천 원대 후반으로 적어도 병설유치원에 준하는 급간식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즉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과 나머지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간의 급식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여 금식판•흙식판 논란이 촉발된 것이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언론과의 인터뷰[6]에서 “물가가 상승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야채나 쌀과 같은 것들이 요즘 농업도 자동화된 공정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단가가 낮을 수도 있다. 식재료비를 표준보육료에 곧바로 대입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산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물가는 올랐지만 식재료비는 안 올랐다는 궤변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왜 3,862원인지 해명부터 해야 될 것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16년에 펴낸 보고서 <어린이집 식자재 품질관리 및 적정급식단가 산정요구>에 따르면 일반급식 적정단가는 2,616원, 친환경급식 적정단가는 3,403원(만3~5세 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턱 없이 부족한 금액에 급식을 끼워 맞추다 보니 값싼 인스턴트식품이 많아지고, 식재료의 질을 떨어지고, 양도 부족한 실정이다. 수십 년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면서 성조숙증 예방, 아동비만 예방을 말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린이집 조리사들은 급식 80인분을 혼자 준비한다.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 것이고, 그러다보니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 반조리 식품 사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급식 시스템을 조금만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예정된 악순환의 연속이다.

2019년 국방 예산만 46조이다. 아이들 급간식비를 1.5배 올리는데 2,500억이 들고 이는 국방 예산의 0.5%도 안 되는 돈이다. 나라 예산을 아끼려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에서 반나절동안 배고픔을 참아야 한다면 아동수당 10만원은 무슨 소용일까. 정부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을 올리고, 급간식비 예산을 늘려서, 조리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급식의 양과 질을 현실화 하여 아동의 발달권을 지켜야 한다[7].

○ 어린이생명안전법: 살아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최소한의 약속

□ 2016년 4월, 경기 용인 어린이집 앞에서 차량에 치인 후 후속조치가 늦어 5살 해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8월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

6) 공공기관 어린이집 6391원 금식판도 복지부 인상계획 없어-어린이집 급·간식비 11년째 1745원 (여성신문 2019.8.16.)
http://www.women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192332

7)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1,745원 인상 촉구 (정치하는엄마들 2019.8.26.)
https://cafe.naver.com/politicalmamas/5613

의 한 어린이안전기본법은 다시 수정 보완하여 2019년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 2016년 7월, 광주 특수학교 차량 내 방치로 인해 8살 한음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 8월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국회 본회의 상정 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4살 하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8년 1월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5월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2019년 7월 이용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제2하준이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상정도 되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

□ 20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윤상헌, 이용호, 이정미, 표창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들'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이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문화체육관광위 등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 2019년 9월, 충남 아산 스쿨존 차량사고로 9살 민식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월 강훈식 의원이 '도로교통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입니다.[8)]

이 사고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놀이공원 주차장, 사설학원차량, 스쿨존 등 모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일어났고, 모두 어른들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할 곳이 아이들의 생명을 져버렸다.

8) 눈물로 호소한 부모들 "아이 안전 바라는 게 욕심입니까" (베이비뉴스 2019.10.2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51

해인이는 어린이집 하원 차량을 타기 위해 기다리다가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에 치였다. 해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이지만, 위험한 등하원 환경을 방치하고 잘못된 후속조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어린이집의 과실이 크다. 하지만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책임을 면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민사는 아직 진행중이며, 아직까지 누구도 아이의 죽음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발생 후 3주만에 매각했다.

어린이집은 아이에게 전혀 안전한 환경이 아니었다. 통학차량의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도로쪽을 향해 있어 아이들이 항상 도로쪽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사고 전까지 도로와 어린이집 주차장 사이에 방지턱 조차 없었다. 상황을 더 살펴보면 얼마나 아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심각한 내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거짓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잘못된 응급처치로 병원 도착 전 심정지로 사망한다.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직후 아이를 안고 응급실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이 없고 오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처할 수 있어(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처벌이 매우 약하다. 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어린이 이용 기관에게 강제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9)]

해인, 한음, 하준, 태호, 유찬, 민식. 아이들 생명에 빚진 법안들 뒤에는 그 이

9)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

름 뒤에 '법(法)' 자를 붙여 세상에 내어준 엄마, 아빠들이 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 [10]으로 한 마음 모아 정기국회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사람들이다. 피해자로만 머물러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지에 정부와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정치권은 전혀 쟁점사안이 아닌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아이들 이름을 세상에 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더 이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아동 관련 예산이 GDP에 비례해서 증가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격차를 감소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입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단계에 걸쳐 적정한 재정적인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할당된 자원의 활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예산할당을 도입하고 현존하는 아동 청소년 의회 및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산수립 과정에서 양육자와 아동참여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회

지금까지 양육자들은 정부에게는 '지원' 받는 돌봄의 수혜자, 시장에서는 소비자일 뿐이었다. 돌봄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제도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사회는 아동 당사자는 물론 양육자들을 돌봄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발언권과 결정권을 함께 주어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와 눈 마주치며 표정을 살필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에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시민 스스로를 위해 의무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인권교육을 받아 서로의 인권에 대해 이해를 넓히도록 하자.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는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아이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연령,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출신민족, 출신국적, 사회경제적 배경, 이주 배경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을 방지해야 한다. 국내 모든 아동들을 출생신고 하여 보육시설, 교육, 보건, 복지, 여가 국가 지원과 관련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양육비를 모든 가정에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아동최우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단단하게 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제정하도록 하자.

아동인권은 모든 인권에 부합한다.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입법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포용국가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아동 생명 안전에는 개선의지도 예산투입도 없으면서 허울 좋은 이름 붙이는 나라에 내일은 없다.

10)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토의 • 장애아동지원체계

UN CRPD를 통해 본 우리나라 장애아동 지원체계의 한계와 개선방안

이용석 부위원장
(CRPD NGO연대 보고서총괄위원회)

1. 장애아동의 개념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당사자들의 투쟁을 통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장애인이면서 아동이라는 이중의 약자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법>을 기반으로 한 장애정책들이 성인장애인 위주로 구성되고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며, 아동정책도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장애아동과 그들을 양육하는 가족들은 아동정책에도 장애정책에도 고려받지 못한 채 복지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은 기본적인 양육비 외에 교육, 치료, 재활, 보육 등의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표출될 때마다 확충하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개발되고 시행되다보니 매우 산발적이며 일시적인 사업형태로 제공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11년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제정목적은 장애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통합적인 사회적 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이긴 하지만,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구성됨으로써 충분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등 중증장애의 장애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② 기존의 장애아동 서비스가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분위 등으로 구분해 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장애아동의 법적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④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자신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등의 정보파악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이를 기초한 정책방향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장애아동의 법적 개념은 어떻게 될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는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안에는 ‘장애아동’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했다.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지체된 만 18세 미만인 자로서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또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의 전공과[11]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자를 포함”했다. 이러한 장애아동의 개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 아닌 경우에도 장애아동으로 규정해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환자까지 포괄함으로써 법적 적용대상을 확대해 놓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에 대한 명확한 연령 기준조차 제대로 규정하지

11) 전공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는 60세 이상인 학생도 있다.

않은 상태에서 관련 복지서비스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각 사업별로 연령을 한정해 장애영유아에 대한 돌봄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까지의 장애아동을 포괄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활동지원서비스가 있으나, 그나마 장애아동수당은 그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1~3급)아동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장애아동이 대상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

2. 장애아동 현황과 지원제도

현재 연령기준으로의 장애아동의 수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등록장애인 기준이라는 한계를 감안한 장애아동의 추정수는 105,284명이며, 연령별로 보면, 0~9세 장애인 수는 30,497명(시설수용자 포함)으로 이 연령대의 장애 출현율은 0.66%이며,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0.23%)이며, 그 다음은 자폐성장애(0.15%), 뇌병변장애(0.11%)의 순으로 출현율이 높았다. 10~19세 아동·청소년 연령층의 장애인 추정수는 74,786명(시설수용자 포함)이며 1.31%의 출현율을 보였다. 이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장애유형 역시 지적장애(0.68%)이고, 그 뒤를 이어 뇌병변장애(0.21%), 자폐성장애(0.13%), 청각장애(0.10%)이다.

장애아동 추정수 (2017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구분	추정수(재가)	추정수(시설)
0~4세	5,294	176
5~9세	24,277	750
10~14세	28,177	1,332
15~19세	42,616	2,661
총계	100,364	4,919
	105,284	

3.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장애아동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실효적인 아동정책조정기구 운영, 아동예산과 자료수집, 독립인권모니터링, 아동 참여권, 학생의 표현의 자유, 체벌 금지, 대안양육체계 내 아동 최상의 이익 등과 함께 베이비박스와 아동유기, 미세먼지와 석면, 기후변화 등 환경과 아동 건강, 수감자 자녀, 빈곤아동 및 아동노동, 성소수아동 등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특히 우리 CRPD NGO연대는 장애아동 분야에 주목하였는데, 모두 다섯 개의 장애이슈가 매우 포괄적으로 언급되었다. 위원회는 우선 5년마다 새롭게 시행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채택, 그리고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전문가와 할당된 예산이 증가한 것에 주목' 하고,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a) 장애에 대한 권리기반 접근을 채택하도록 법과 정책을 검토하고,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하도록 보장할 것,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c) 학교 기반시설의 적절한 편의시설, 스포츠와 여가를 위한 장소, 통학 수단, 훈련 및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정하는 것을 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제공할 것, (d)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에 착수할 것[12]과 계속되는 특수학교의 증설 및 교육기회 및 편의시설 미비 및 장애인식개선 재고를 지적[13]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 해소 및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들이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SDG 목표 4.5와 관련하여, 장애아동의 통합교육과 합당한 편의제공

12) F.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27(1)-(3), 33조)
13) G. 교육·여가 및 문화 (협약 28, 29, 30, 31조) (d).

보장과 장애아동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의 장애아동에 대한 최종견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즉, ①아동은 스스로 고유한 생명의 주체로서 생존 및 발달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으며, ②그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고, ③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며, ④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원칙은 당사국이 아동인권에 기반한 정책을 실현되어야 하며, 아동이 인격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의 양육, 학교 및 지역사회의 만연한 차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마련에 나서야 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차별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3조와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제24조는 장애아동에 대한 존엄성 인정 및 자립과 사회생활 전반에 적극적 참여를 지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 복지, 교육, 보육, 문화 및 여가 등의 정책적 환경은 전혀 장애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각종 복지 및 보육 서비스는 대상을 한정하거나, 비용의 부담, 정보제공의 부재 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은 물리적 통합만 제공될 뿐이다. 이마저도 서비스기관들이 대도시 위주로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격차로 장애아동의 의료, 복지, 교육, 보육, 문화 및 여가 등의 서비스 및 교육받을 권리는 돌봄과 이동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의 희생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아동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마련된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국가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 및 돌봄 지원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에 향상의 필요충분조건이어야 한다.

4. 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장애아동 권리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을 통해 “비장애아동과의 동등한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유엔아동권리협약과의 협력과 책임을 촉구” 하고 제3조 일반원칙과 제4조 일반 의무를 통해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 존중 및 각종 법률과 정책 개발 및 이행 등의 의사결정 절차에서 장애아동의 적극적 참가” 를 당사국에 촉구하고 있으며, 제7조에 장애아동 조항을 독립적으로 구성해 ① 비장애애동과의 동등한 인권과 자유 보장, ②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 우선, ③ 장애 및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지원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제 7 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

이러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들은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했던 아동인권과 비차별의 원칙들과 그 의미가 같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아동 정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규정을 잘 지키고 있을까? 지난 4월 유엔에 제출된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① <아동복지법>을 통해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통합을 기초로 한 기본이념을 둔 법률이 있음에도 장애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② 이들 법률들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가족의 요구와 의견반영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③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 병원에서는 치료 기능 뿐 아니라 교육, 돌봄, 사회복귀, 가족지원 기능 등 다양한 공공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UN CRPD NGO연대는 제 1차 민간보고서를 통해 돌봄 중심의 장애아동 정책의 기조와 여전히 계획하고 있는 정책 부재의 현실과 장애아동이 여전히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환경에 놓여있음을 지적하고 학대와 폭력, 비장애아동과의 통합놀이환경 제공, 법적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특수교사의 법정인원 확보 등을 질의서에 담았다.

제7조 장애아동	
이슈1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학대와 재학대에 시달리는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와 2차 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부모 등 가족에 대한 조치 마련
이슈2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정밀검사 지원을 통한 발달장애아동 발견 및 치료에 대한 국가의 조기 개입
이슈3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놀 수 있는 환경 제공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등등하게 놀이의 기회를 갖기 위한 통합놀이터의 법적 근거 마련
이슈4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실종 대응 시스템 부재	점점 늘어가는 장애아동 혹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공조 시스템 마련과 실종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 실종 시 적용되는 매뉴얼 제작 등 방안 마련
제24조 교육	
이슈1 장애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의 법적 의무교육 보장 강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행 부처를 일원화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 방안
이슈2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보조인력 충원 방안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생 4.5명 1명의 특수교사 배치 규정과 장애학생의 70%가 재학하고 있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보조인력 확충 방안 마련
이슈3 교육현장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폭력 등 인권침해 대처 미흡	「장애학생인권보호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와중에도 특수학교에서는 교사 등에 의한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이러한 UN CRPD NGO연대의 제1차 민간보고서 장애아동 이슈들은 학대와 폭력, 실종, 의무교육과 법적 교육환경 개선 등 사회적 보호와 교육 시스템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장애아동들의 현재의 상황에 주목한 결과다.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서의 배제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재생산하게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과 차별은 공고화된다. 이번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권고인 ① 법과 정책에서의 모든 장애아동을 포용 보장, ② 난민, 이주를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의료적 지원, 조기 발견 및 국가 개입 보장, ③ 학교의 적절한 편의시설, 스포츠와 여가를 위한 장소, 통학 수단, 훈련 및 개별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를 배정하는 것을 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 제공, ④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제고 등도 결국 장애아동의 인권과 비차별을 근거로 한 권고이며, UN CRPD NGO연대의 민간보고서의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이슈와 그 원칙을 함께 하고 있어 환영하며, NGO연대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한 제도의 설계 및 시행 등 정부의 최종견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5. 인권과 비차별 중심의 장애아동 지원체계 필요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는 복지, 보육, 교육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복지	보육	교육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소득관련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장애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등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보육료 지원	초중고 전과정 의무교육,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통합교육, 중증장애 아동 순회교육

장애아동 지원 제도[14] (2019년)

구분		대상
교육지원	장애아 보육료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임에도 부득이한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카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장애아전담보육교사 or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하면 462,000원 , 배치 않을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소득지원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 1~6급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아동수당 2~20만원 지급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휴식지원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제출.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1~3급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
	발달재활서비스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장애유형 및 소득기준 등
기타지원		고려하여 선정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부터 만6 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을 시 동시 이용 불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중위소득 120% 이하

14) 보건복지부, 2019 장애연금 사업안내, 2019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2019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 2019 보육사업안내

현행 장애아동 지원체계의 문제점은 서비스 대상자의 한정성, 전달체계의 분산, 제공대상 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 대상자 한정성은 장애아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장애정도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중증장애와 저소득층 배려는 당연하지만 서비스의 총량의 확대 없이 서비스의 대상자만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은 계속해서 삶의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변화하게 되는 복지서비스 환경과 늘어나게 될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식 등을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아동의 의료적,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생활환경적 요인과 가족의 필요욕구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서비스 판정체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 생애주기적 특성, 다양한 가족 환경 등을 반영하여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서비스 전달체계인데, 현재 우리나라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 교육, 보육, 문화 및 여가 등 부처별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산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각각의

서비스들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등 통합된 지원서비스의 정보제공을 받지 못해 지원을 포기하는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및 복지, 교육, 보육, 문화 및 여가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정보 제공 포털 웹사이트'의 운영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연령별 필요한 각종 서비스의 내용은 물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장애아동의 전생애적 복지지원 서비스 정보 메칭 포털의 운영이 시급하다.

세 번째로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각 법률마다 다른 장애아동의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맞춰 각 서비스 지원대상 연령을 시행령 등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지원 내용을 촘촘히 세분화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아동이 성인 이후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노동이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지원체계는 반드시 장애아동 당사자의 특별한 욕구를 기반으로 한 인권적 비차별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중심으로 가족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경제적 부담, 정서적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빚어지는 가족의 해체 등의 불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극한의 상황이 결국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원예산의 확대와 적절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장애아동 지원대책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은 절대적 국가의 과제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은 분명하다. 장애인당사자의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 및 비차별을 기반으로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 다양성의 존중, 기획의 균등을 통해 장애로 인해 물리적, 심리적, 정보적, 경제적 접근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이 모든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학교

에 갈 권리,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토의 **• 성착취 피해아동 보호**

“대한민국은 모든 성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당사국의 책무를 이행하라.”

조진경 대표
(십대여성인권센터)

2019년 9월 18일과 19일에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가 2019년 10월 3일에 발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후속조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무엇보다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a) 교사에 의한 성희롱뿐 아니라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그루밍의 증가를 포함하여 성폭력 및 성적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

(b) 만 13세 이상인 아동은 동의능력이 있다고 간주되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점,

(c)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다고 고려되는 아동(“대상 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며,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금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어 성적 착취를 당해도 신고를 단념하게 된다는 점,

(d)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포함한 관대한 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이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력히 권고하였다.

(a)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b)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

(c) 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의 연령을 상향할 것,

(d) 다음과 같이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에 연관된(대상아동)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처우할 것,
(ⅰ)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할 것,
(ⅱ) “보호처분”을 폐지할 것.
(ⅲ) 지원서비스 및 법적 조력을 제공할 것.
(ⅳ) 보상과 구제를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을 보장할 것.

(e)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

(f)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범죄자들이 강요의 증거 유무와 상관없이 기소되고, 적절한 제재를 받도록 하며,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

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위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각 정부 기관의 후

속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제안사항

Ⅰ.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라.

1)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15)]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2017). *"Online Groom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Virginia: The Koons Family Institute on International Law & Policy.)

※196개의 결과 보고 중 일부분

국가	온라인 그루밍 관련 법률 존재	"온라인 그루밍"의 정의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의 온라인 그루밍	아동을 만나려는 의도와 상관없는 온라인 그루밍	아동에게 성인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대한민국	✖	✖	✖	✖	✓
말레이시아	✓	✓	✓	✓	✓
미국	✓	✓	✓	✓	✓
싱가폴	✓	✖	✓	✖	✓
아일랜드	✓	✓	✓	✓	✓
영국	✓	✓	✓	✓	✓
인도	✓	✓	✓	✓	✓
일본	✖	✖	✖	✖	✖
중국	✖	✖	✖	✖	✓
캐나다	✓	✓	✓	✓	✓
터키	✖	✖	✖	✖	✓
포르투갈	✓	✓	✓	✓	✓
호주	✓	✓	✓	✓	✓

2)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현행 '아청법' 개정

현재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 보호처분 조항 삭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통합지원센터설치, 장애아동 성매수범죄 가중처벌, 성범죄자 공소시효 폐지, 성매수범죄자까지 포함한 성범죄자 명단공개를 골자로 한 통합

15) 이수정(2019),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법·제도적 대안", 2019년 3차 성매매 방지 정책 토론회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자료집,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아청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현재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은 상태이고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IT 기술개발의 진보에 따른 핸드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다양한 사이버상 성착취 매개들을 모니터링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

IT 기술 매개를 통해 성착취 영상물과 성매매 알선 정보가 아동·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률이 부재하다.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급한 조치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성착취로 알선 유인하는 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유해매체물 지정'과 '성인 인증절차의 도입'이다.

Ⅱ.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라.

1)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폭력 구분 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성매매방지종합대책', '교육정책' 등 각 아동 관련 정책기본계획에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시키고, 관련 담당 부서와 인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2) 법무부, 경·검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역시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담당 부서와 인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작동, 제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입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방어체제 구축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5)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대한 UN 특별보고관이 권고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수요에 대한 모든 단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즉, 직접적인 관계자뿐 아니라 중개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며, 이러한 조사를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포괄적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Ⅲ.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독립된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1)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독립된 지원체계 및 정책이 부재하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죄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제시되는데, 9세 미만 아동은 정책 대상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대부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에도 교육부와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담당부서는 누더기처럼 분절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정책은 '성인' 성매매 관련 법·제도를 관할하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이때에도 ①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사항은 권익지원과에서, ②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③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운영' 등은 권익기반과에서 담당한다. ④ 성매매에 유입될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청소년자립지원과와 청소년보호환경과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상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으로 공식명칭으로 정해, 마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듯한 잘못된 착각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제도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과 대안교육 위탁기관만이 유일하다. 아동·청소년만 전담으로 지원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없다.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세우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의 '성매매방지중앙점검단' 역시 성인과 구별되는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계획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대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 발견, 법률, 의료, 심리, 상담, 주거, 학업, 일자리, 교육 등의 지원을 포함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범죄는 구별없이 성착취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모두를 동일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변화가 있을 때까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구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지원체계는 관계자들에 대한 전문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Ⅳ.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자 교육 제공

1)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 특히 법적, 심리적 훈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2) 경·검찰 등 수사관련자와 법원, 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관계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일관된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하고 정기적 교육훈련이 실행되어야 한다.

3) 발견과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내 기관, 예를 들어 학교,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교회, 복지관, 청소년단체, 구청, 동사무소, 지역 경찰소 등에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발행한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고, 이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일관성있게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하여야 한다.

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마련

1)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알선업자, 소개업자, 조력자 뿐 아니라 재정, 기술을 담당하는 자까지 공급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의 기관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성착취에 이용되기 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체포, 기소, 유죄판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예방 수사기법(예를 들어, 성매수자와 알선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잠복수사나

'스위티 프로젝트'와 같이 AI를 이용한 수사기법 등)을 개발하고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등을 통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Ⅵ. 예방교육 및 사회적 인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대중 캠페인

1) 학교안, 학교밖,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대안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소 등에 성착취 예방 교육과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한 동일한 전략과 방향을 담은 컨텐츠 구축 및 장기적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온라인 성매매와 그루밍, 그리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광고 및 대중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토의 ● 소년사법과 아동권리

아동권리에 기반한 아동사법(Child Justice)이란

김희진 변호사
(국제아동인권센터)

2019년 9월, 대한민국의 제5-6차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에 대한 심의현장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Juvenile Justice)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신체구속과 무력 제한 및 성인과의 분리수용 원칙, 보호자 참여권, 우범소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가득 담긴 질문들이 제시되었다.[16]

- 아동 중에서 자신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이런 아동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아동 피의자가 보호자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게 되는지요?
- 소년분류심사원은 폐쇄된 시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촉법아동들이 그곳에 머물며 사실상 미결구금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이 폐쇄시설과 관련한 규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요?
- 10~14세 아동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2~14세였지만 하향조정된 연령이죠. 다시 말해 10세 이후에 구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나요? 그리고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계획이 있는지요?
- 10세 이상 아동은 우범행위 소지가 있을 경우, 즉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와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누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실제 성향이라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향이라는 것의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정부가 이와 관련한 조항을 철폐할 계획이 있는지요? 이 해당 조항은 모든 법과 규약에 다 위배됩니다.
- 구금시설에 있는 성인 수용자 중 1-2명이 봉사원으로 지정되어 소년들과 함께 수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감호규정(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에 따른 것인데요. 그리고 한국에는 단 1개의 소년교도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 소년교도소입니다. 그런데 통계치에 따르면 전체 소년 수용자 416명 중 65명만이, 즉 15.6%만이 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김천 소년교도소는 명칭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김천 소년교도소에 있는 450명의 수감자가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으며, 416-65명(351명), 그 많은 소년들은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 겁니까?
- 소년전문법원의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요? 또 한국의 형사책임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구금시설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인실에 수용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동에게 수갑을 채운다거나 아이들의 몸을 구속하는 그러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고문이라든지 전기충격을 사용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행위들에 대해 답변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 현장에서 한국 정부의 답변이 제시된 질문은 단 1개에 불과했으며,[17]

16) 이하의 표에 정리한 질문기록은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본심의 현장을 중계한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본심의 전체 기록은 국제아동인권센터 블로그 공지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hildrights/221661175709)

17)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질문은 심의 종료 이후 48시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서면 답변으로 응답되었을 것이다. OHCHR 웹사이트를 통해 심의과정에 제출된 관련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 11월 9일 기준 대한민국의 제5-6차 심의에 대한 국가 추가답변(Additional Info from State party)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출처: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CountryCode

그마저도 아동권리협약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에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 ▪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현재 14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진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아동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청됨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여러 보호적 수단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한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제5-6차 최종견해가 채택되었다. 특히 이번 최종견해는 소년사법을 포함하여 각 이슈와 관련된 우려와 권고사항이 여느 때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언급된 특징이 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가 표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협약 이행과정에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할 것이다.

○ 용어의 변화: 아동사법

이 중 눈여겨보아야 할 첫 번째는 용어의 변화이다. 위원회는 최종견해 소제목에서 종전의 소년사법 행정(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대신 아동사법 행정(Administration of Child Justi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 및 계속하여 사용되는 아동의 자유박탈 조치를 우려하며, 소년사법에 관한 기존의 일반논평 제10호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그에 대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18] 당시 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법 위반 아동의 존엄성과 가치를 긍정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소년사법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존의 용어를 '청소년사법(youth justice)', '아동사법(child justice)'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촉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9] 소년(Juvenile)이라는 용어 자체로 아동에 대한 낙인이 가해지는 현실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청한 것이다. 그 결과 2019년 9월 채택된 일반논평 제24호는 제목부터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권리」로 수정되었으며, 일반논평 전반에서 아동사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한국 또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 위반행위로 인해 경찰·검찰 수사단계에 있거나 소년재판·형사재판 과정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낙인이 되어, 이들 아동에 대한 편견, 배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 위반 아동에 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는 소년사법은 아동기의 회복탄력성을 신뢰하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공동체의 책임을 전제한다.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내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존중받은 경험이 없는 아동에게 타인에 대한 존중을 당연히 요구할 수는 없다. 오늘날 아동범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 사회가 기여한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

○ 우범소년 폐지

우범소년 폐지도 당장 착수해야 할 개선사항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다. 제5-6차 본심의 당시 Renate Winter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우범소년 규정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 리야드 가이드라인(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유엔지침)은 아동에게 '일탈(deviant)',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이라고 낙인화하는 것이 결국 범죄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며, 성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아동이라는 이유로 제재하는 입법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20] 아동권리

=KOR&Lang=EN)

18) 「소년사법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출처: https://www.ohchr.org/EN/HRBodies/CRC/Pages/DraftGC10.aspx)

19) General Comment No. 24 (201x), replacing General Comment No. 10 (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para.6

20) A/RES/45/112, para.56

위원회 또한 일반논평 제10호에 이어 제24호를 통해 지위비행(status offences) 규정 폐지를 촉구하였으며,[21] 국내에서도 2016년 우범소년 규정 삭제를 검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22]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아동은 없다. 보호와 돌봄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기본적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지 못한 아동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취약한 상황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이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국가의 역할이 통제와 감시, 관리가 되어서도 안 된다. 포용국가의 아동보호체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지향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 아동의 자유박탈과 형사책임 최저연령

아동의 자유박탈은 아동사법제도에서 특히 주요한 이슈에 해당한다. 범죄에 대한 응보와 대중에 대한 위하력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법체계는 근본적으로 자유박탈적 조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사법체계는 자유박탈적 조치를 최후의 조치로, 필요한 최소한 기간에 그쳐야 하며, 다양한 다이버전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청이다. 아동권리협약뿐만 아니라, 협약 채택 이전에도 베이징규칙(소년사법 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을 통해 확인된 원칙이다.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지고 있다. 2014년 5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유가 박탈된 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현황진단, 모범례 발굴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였고,[23]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유엔 사무총장에게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연구를 요청하였다.[24] 아동에 대한 사법행정을 포함한 각 영역별 자유박탈

21) CRC/C/GC/10, para.8, CRC/C/GC/24, para.12
22)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4.자 결정,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
23)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 NGO Panel 웹사이트 - 국제연구 타임라인 (출처: https://childrendeprivedofliberty.info/wp-content/uploads/2016/11/CRC-Letter-to-UNGA-May-2014.pdf)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 위 국제연구는 2019년 11월 19일 최종보고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국제연구에 한국의 실태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국제연구를 위해 유엔 회원국 각국에 요청된 '공통설문지'에 한국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5]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인지, 한국에는 자유박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탓인지, 혹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었기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한국정부가 자국에서 발생하는 자유박탈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외면했다는 것이다. 협약에 명백히 반하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는 형사책임 최저연령과도 연결된다. 자유박탈아동에 관한 국제연구도 각국이 정하는 '형사책임 최저연령', '아동을 위한 별도의 사법제도가 적용되는 연령기준'을 물었다. 아동사법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제도로서, 아동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제도는 실패한 제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4호를 통해 "최저연령을 최소 14세까지 높일 것"을 권장하며,[26] 두 개의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적용하는 당사국 제도가 그 목적과 달리 실제로 적절한 보호기능을 수행하는지 증명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27] 즉, 아동사법제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일반논평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최저연령'을 과연 14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10세 이상 아동에 대한 사법적 개입은 사실상 자유박탈 처분으로서, 형사사법 체계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호처분 이외 보호관찰과 시설위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과연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범죄기록을 방지하며 이들의 회복을 촉진하는 다이버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소년분류심사원, 6호 처분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소년원 모두 '구금시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24) A/RES/69/157 para.51.d
25) 경향신문 2019.7.29.자 기사 "[보호와 처벌 사이 : 소년사법 보고서] (4)자유 뺏긴 '새장 속 아이들'의 울음소리 안 들리나요"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7292156005#csidx0fdfa0c818a843fb347b2e72767c6f9)
26) CRC/C/GC/24, para.22
27) CRC/C/GC/24, para.26-27

기관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28]이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단지 현행법체계에 따른 형식적 적용을 넘어 아동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동사법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아동사법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성 확보도 강조되었다. 결국 아동사법의 핵심은 사람이다. 아동발달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상기할 때, 아동의 변화는 아동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에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사법전문법원 설립과 함께 아동전담 법관 및 법 위반 아동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이며 의무적인 아동권리 훈련 제공은[29] 아동사법을 포함하여 협약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요청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가 실시한 아동 당사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접조사 참여자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대화를 나눠주었던 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으나, 보호처분 경험이 자신의 긍정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시설수용 아동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절한 의료조치가 제공되지 못하며, 징계 일환으로 신체구속 및 무력 조치 경험도 응답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년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기준과 적절성에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전반에서 아동인권에 기반한 일관된 조치가 부재한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30] 한편, '소년범죄의 특수성' 및 '아동권리'에 관한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사, 보호관찰관, 소년원 종사자는 평균 수준으로 적절하게 제공된다고 답변한 반면, 국선보조인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상반되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는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청되며, 나아가 아동권리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될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31] 즉, 아동사법 본연의 목적은 아동이 그들의 존엄성을 토대로 자기반성과 회복을 위한 힘을 키워내는 것이며,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동의 연령과 신체적 성별에 따른 특성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장애, 인종 및 국적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 아동을 포함한 어떠한 아동도 차별과 편견에 방치되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절차를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아동을 위한 특별한 사법절차라고 하여, 그들의 재판상 기본권이 달라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 형사법 제도에 따른 기본권 보장은 당연한 요청이며, 그에 더하여 추가적인 보호적 조치가 마련되고 준수되어야 마땅하다는 명확한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준비는 아동사법 절차 전반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종견해를 마주하며, 다시 한 번 물음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의 소년사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과연 한국은 아동권리협약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포용국가는 진정 '배제되는 아동 없는 모든 아동'의 권리 실현을 지향하는가?

부디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담긴 우려를 진심으로 경청하길 바란다. 제5-6차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아동사법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협약을 이행하는 한국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28) CRC/C/CO/KOR/5-6, para.47(b)
29) CRC/C/KOR/CO/5-6, para.47(a)
30) 국가인권위원회(2018),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p.116-167.
31) 국가인권위원회(2018),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 연구, p.167-235.

토의 • 이주아동의 권리

“모든 아동을 위한 포용국가” -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이탁건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Ⅰ. 한국의 이주배경 아동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제2조)과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제3조)을 당부하고 있다. 즉,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이념에 의하면 이주배경 아동은 한국에서 다른 아동들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한국 땅에서 이주배경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차별에 노출되며,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다양한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9년 9월 진행된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6차 심의에서 정부가 중요한 성과로 제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서 이주아동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한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이상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난민 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할 때 아동보호체계에 편입되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주아동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되는지 등 한국에서 이주배경 아동들이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등 현장의 정부 대표단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지만 대표단은 이주배경 아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의에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Ⅱ. 한국의 이주배경 아동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난민 아동을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와 이들의 보호에 대한 권고는 협약 제22조, 제30조, 제32-33조, 제35-40조의 일부 조항에 근거하여 H. 특별보호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아동의 구금, 아동의 정규화, 출생등록, 보육, 교육,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 여가, 학대아동 보호체계 등에 대한 권고 및 현행 제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구금

관련 부처: 법무부
43. (a)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할 것;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 망명과 가족 재결합 문제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심의 중 법무부는 “여권을 소지하는 등 즉시 본국 송환이 가능한 경우 아동을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하지 않고 출국조치” 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출국 준비가 필요하고 국내에 아동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와 함께 특별 보호방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주아동이 부모와 함께 구금이 되는 것은 협약 조항에 위반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이주아동의 구금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없어, 한국에서

는 법적으로 아동구금이 허용된다. 국가보고서 및 LOI에 대한 정부의 답변, 제네바 현장에서의 답변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14세 미만 이주아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이 아닌 내부 규칙 상의 규정에 불과하며, 부모가 구금된 경우 구금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을 같이 구금하고 있다. 이주아동의 구금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2017년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이지만 법무부의 사실상 입법반대의견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주아동 구금 제한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현재까지 없었다.

2. 무국적 판정 절차

관련 부처: 법무부
43. (b) 난민 및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할 것;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신분을 규정할 것;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난민신청아동, 난민아동 및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훈련을 강화할 것;

대한민국은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는 무국적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정책이 없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 또는 난민 아동 중 무국적 상태에 놓인 아동의 실태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하다. 이주아동의 무국적 판정절차를 도입하여 무국적자로 판정된 아동에게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무국적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비차별

43. (c)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신청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정신적 신체적 보건의료, 건강보험,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 여가, 학대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및 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

위 권고와 관련한 내용은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권고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출생등록

관련 부처: 법무부, 법원 행정처
22. (a)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또는 출신지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c)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 미등록 출생아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d) 출생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것

한국 정부에 보편적인 출생등록 제도,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체류자, 비호신청자, 또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는 아동권리위원회 뿐 아니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거듭 반복된 권고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각 조약기구의 한국 심의에 대한 국가보고서 등을 통해 외국 국적자 자녀의 출생등록은 해당국 대사관의 책임이며, 대사관 출생등록이 어려운 난민 등의 자녀에게는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출생등록은 국적 취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출생등록을 가족관계등록의 하위 범주로 두어 국민에게만 허용하고, 가족관계등록을 통해서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의 현행 출생등록 제도 자체가 이미 보편적 출생등록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에서 출생한 모든 이주아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이나 국적취득과 무관한, 별도의 출생등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아동의 보육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31. (a)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포함하여, 돌봄 서비스의 범위와 적절한 유연성을 늘리고, 모든 아동이 국적에 관계없이 보육시설 및 재정적 지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제4조에서 모든 '국민'에만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아닌 외국인은 영유아 보육 책임에서 배제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원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 아동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권자에 포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아동은 모두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보육지원의 부재는 한국사회에서 이주아동들이 안전하고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양육되거나, 연령에 맞는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모의 출신국을 오가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상 영유아 보육 책임의 대상을 '국민'이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보육비 및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본인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아동의 교육

관련 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42. (b) 모든 아동이 출신, 주거지, 등록(registration)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이주 지위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교육기본법」을 검토할 것; …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농촌지역 아동,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다문화 아동 및 탈북 아동을 포함한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주류학교 접근성과 통합을 보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촉진할 것;

이주아동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심지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부모는 추방이 유예된다고 주장하나 체류자격 부여 없는 추방 유예는 교육권의 완전한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미등록 아동의 고등학교 이후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 아동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한편, 학교에 다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에 의해 오히려 취학 전 영유아, 학교 밖 아동, 고교 졸업생 등에 대한 단속, 구금, 추방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행되고 있다. 아동들은 부모와 함께 또는 단신으로 구금, 추방되며, 인도적인 사유로 구금 일시 해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체류자격의 부여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4) 이주아동과 장애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36. (b) 난민신청 아동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장애아동을 위하여 재활 치료, 적절한 복지, 그리고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할 것;

한국에서 장애인이 의료를 포함한 적절한 복지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민 가운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아동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극소수의 이주아동만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을 한 이주아동이라도 이주민에게는 "예산을 고려해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가 있는 이주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치료, 재활,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5) 건강권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37. (a)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 및 이주아동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것 (b) 이주 아동의 예방접종 접근 가능성을 개선할 것

2019년 7월부터 이주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등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주민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국인에 비해 높게 책정하고 있어 저소득층 또는 실직 이주민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국적의 미성년자는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부모가 없는 이주아동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6)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보호

관련부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27. (g)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학대 예방, 피해아동의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을 보장할 것; (i)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사, 임상심리사, 변호사의 수 증원 (ii) 아동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대리인 제공 (iii) 이주아동 및 장애아동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접근 보장;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아동은 난민 인정자가 아닌 이상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이주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부터 시설보호 이주아동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발표했지만, 생계비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근거하고 있어 쉽게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또한 이들에 대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전무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주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2013년 64건에서 2014년 64건, 2015년 9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학대 등의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수는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5명에 불과했으며, 그 중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2013년 1명, 2014년 1명, 2015년 1명으로 더욱 적었다.[32]더욱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치에는 이주민 지원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시설보호 이주아동이 다수 빠져있어, 정부가 이주아동의 학대와 보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대피해 이주아동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법무부는 정부가 2019년 4월 23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학대피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피해 아동 및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체류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G-1체류자격을 부여한다고 답하였는데, G-1 체류자격은 기본적으로 의료, 교육 등 어떠한 수급의 대상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이주아동에게는 적합한 체류자격이 될 수 없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아동 분야 사업 안내」를 개정하여 학대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이주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어 아동복지시설장이 이주아동의 시설 입소를 거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복지부의 지침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이주아동의 생계비 지원도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자체가 협의하여 당시 입소하고 있던 학대피해아동 “6인 전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답변을 들은 한 위원이 현장에서 “통역을 통해 들었는데 6명이 맞나, 통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다. 현장에서 심의를 모니터링하던 시민단체의 활동가는 위원에게

32)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018년 이주아동 학대판단 건수는 100건 이상이었으며, 이 중 시설에 있는 아동이 6명이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7) 자료 수집 및 예산의 배정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3. (f)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을 강화할 것; (g) 난민아동, 난민신청아동 및 이주아동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것.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정책 수립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발표되는 법무부의 출입국통계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따로 집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태어나 출입국 기록이 없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외국인 주민의 자녀를 집계하고 있지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들은 여기에서 빠져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처음 수립된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그 대상을 한국에 거주하는 17세 이하의 모든 아동으로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만을 언급했다가 시민 사회의 반발로 외국 국적의 이주아동이 포함되는 일도 있었다.

한편, 2018년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연구사업 수행 기관에 연구를 통해 수집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실태조사가 이주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연구윤리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난민 및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절한 예산수립에 대한 권고는 위원회의 지난 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이지만 아직도 같은 권고가 제대로 이행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

관련부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43. (d) 특히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보호에 관심을 두는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는 「이주아동권리법」을 제정하고 이행할 것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주아동이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이주아동 보호 법안을 마련해 입법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2010년과 2014년에 각각 국회를 통해 발의되었던 이 법안은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지 않고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정부 부처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 폐기되고 말았다.

2019년 9월 진행된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6차 심의에서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계속해서 지적 및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아동의 권리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주아동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5. 유해한 관행

관련부처: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원 행정처
30. 위원회는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아동의 결혼이 부모 동의만으로 승인될 수 있고, 이주 여아 및 외국인 여아의 결혼사례가 보고된 것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외 없이 조혼(child marriage)을 금지하고, 출신국과의 협력, 이주민 및 난민을 위한 공적 등록 절차(civil registration procedures) 개설 등 이러한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일부 문화권 출신의 이주배경 아동의 가정에서는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경제적 부담이 되는 학교 진학을 꺼리며 중학생의 나이부터 남자 아이는 일을 할 것을, 그리고 여자 아이는 결혼을 할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적 또는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는 본국의 문화가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어린 나이에도 결혼을 할 수 있고, 종교 교단을 통해 혼인 증명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법적 혼인 연령과 관계 없이 미성년 자녀의 혼인을 허가하며 심한 경우 강요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사회에는 미성년 자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마저도 국제사회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조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해가 부족하여 조혼임이 명백한 사례에도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웠으며, 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해왔다.

혼인적정 연령에 대해 명시한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조혼을 이유로 처벌을 명시한 별도의 법은 없다.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의 혼인의 경우에는 개입이 가능하지만 13세 이상의 아동이 전통적인 방식의 혼인을 원하여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이를 해당 아동에 대한 명백한 학대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아동 보호에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심의 현장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혼인 성립 여부를 다투는 소가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 혼인의 성립 요건의 준거법이 당사자의 본국법이 되므로 한국 국적이 없는 난민,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의 이주아동의 본국 법이 미성년자의 혼인을 허용하고, 당사자들이 본국의 법에 의해 혼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국제사법 제10조가 외국법 규정의 적용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그 적용을 금하므로 조혼의 경우 법원이 혼인의 성립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개입을 피하였다.

오히려 미성년 여아가 출산할 경우 그 자녀에게도 추가 질의 및 규제 없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조혼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혼과 어린 나이에의 혼인 및 임신과 출산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사실상 교육의 단절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Ⅲ. 이주배경 아동과 한국사회

위 권리는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아동 최상의 이익이 충족된다고는 볼 수 없다. 애초에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을 뿐 아니라, 아동의 생애주기별, 상황별로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모두 달라 원활히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배경 아동 관련, 출입국 관련 사항, 체류자격 및 난민 지위 등에 대한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지원, 복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학령기 아동의 취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도 모두 달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 자신이나 부모의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눈 앞에 닥친, 제도상의 미

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아동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한국에서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등의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통한 지원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이주아동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대상에 이주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이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서 더 나아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정한 '포용국가'를 위한 아동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일 것이다.

MEMO

MEMO

MEMO

보건복지부위탁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포럼

발행일 | 2019년 11월
발행처 |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연락처 | 02-741-3132
디자인 | 에이치썸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